

vol.
028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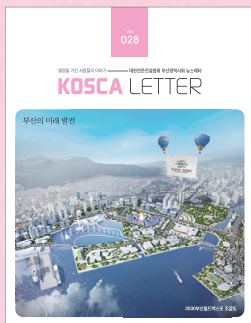
부산의 미래 발전



2030부산월드엑스포 조감도

꽁꽁 얼었던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기지개를 펴는 봄.

한 해의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2021년 Vol. 28

- 표지이야기 2030부산월드엑스포 조감도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 사진제공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단
※ 본 조감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ART 1

- 04 권두사 박수생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태휘 부산 공정거래사무소장

PART 2

- 06 협회 소식
- 18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5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1년 1/4분기 신기술 현황

PART 3

- 26 전문건설인의 삶 건삶인 제53호 - (주)서한기업 대표이사 서쌍철
건삶인 제54호 - (주)청북건설 대표이사 정귀자
- 30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1
- 41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2
- 55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58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 목소리 변화로 발견된 악성종양
- 60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해법



PART 4

- 61 회원사 현황
- 66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 공종별 체크리스트

SPECIAL

- 68 SPECIAL 0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69 SPECIAL 02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 70 SPECIAL 03 생활 속 유용한 꿀팁
- 71 SPECIAL 04 건강지킴이
- 72 SPECIAL 05 부산의 명소 -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 73 SPECIAL 06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하이델베르크성
- 74 SPECIAL 07 취미의 발견
- 75 SPECIAL 08 틈새 회화
- 76 SPECIAL 09 쉬어가는 유머
- 77 SPECIAL 10 틈새 스트레칭
- 78 SPECIAL 11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사회 2021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 79 SPECIAL 12 2021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 80 SPECIAL 13 독자와 함께 - 독자의견 및 퀴즈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미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겠습니다.



박수생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이 더욱 간절해지는 2021년입니다.

먼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제활동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실어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된 대체제가 없는 소중한 자원이며, 도시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듯이 부산시도 수영강과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의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 속에서도 부산시는 특히, 물 문제만큼은 부산시민에게 풍부한 수량과 함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까지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질에 취약한 낙동강 하류에서 발생하는 미량유해화학물질과 하절기 조류문제, 특히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돗물 유출로 인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좋은 원수 공급을 위한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낙동강 원수의 미량유해화학물질과 각종 수질사고에 대응하고자 입상 활성탄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화명정수장에 막여과시설(NF/RO)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제거를 위한 미세공기 가압부상시설(DAF)과 취수구에 가변형 스크린 시설을 도입하여 원수 수질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국제표준 인증 시스템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분야도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물관리 체계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및 수량관리를 실시간 감시하고 자동 제어하는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508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며,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동네 수질정보를 순수 365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상수도 미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재원 투자에 힘을 쏟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턱을 낮추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며 함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전문건설인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및 회원사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공정거래사무소장 이태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부산지역의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및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 고질적인 병폐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약을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 계약 시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 정산기준을 기재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시 원사업자가 정한 수준 이하로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 합의 시 대금 지급방식·기한 등을 서면으로 합의토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업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지역 전문건설업계와 수시로 소통하여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공정거래사무소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도급과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 8월 개소 이후 30년간 인력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급증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업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ESG(환경보호·사회적 책임·투명경영) 경영이 화두가 되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적 책임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사무소는 지역 내 발주자·원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분야에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위기극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기에 희망과 기대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 공정거래사무소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및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휘

부산 공정거래사무소장



제회의 및 행사

※ 매년 개최되어 우리 부산 전문건설인들의 복된 한해를 기원하던 '2021년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01 2021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2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장단과 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과 2021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일정,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일정 등을 보고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6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하기로 협의했다.



02 2021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9일 (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운영위원 22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자문위원 위촉, 준예산 편성·집행, 2021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일정 및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6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03 제36회 정기총회 - 서면결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재산조성적립금 운용(안)' 이상 3개 안건을 서면결의를 통해 재적 대표회원 총 117명 중 114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2021. 1. 28) 했다.

정기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면서,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외부인사 및 회원사 등에 대한 포상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별도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04 2021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 및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연석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18일 (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운영위원 21명, 감사 2명,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5명(운영위원 중복 제외)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 및 업종별 운영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202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종별 접수 현황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체계개편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세원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서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우리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5 2021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30일(07:00 /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회는 '해운대 부민병원 가정의학과 양명화 박사'를 초빙하여 '만성질환과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및 COVID-19 시대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조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방역과 마스크 착용, 참석자 좌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가운데 개최 되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협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양명화 박사에게 '감사의 글'과 '캐리커처'를 전달했다.

조찬회에 앞서 지난 1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단계 방역조치가 진행되면서 개최하지 못했던 우수 유공회원사 시상식이 개최되어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등이 전달되었다.

유공회원사 포상자 명단

(포상종류 및 연장자순)

국도교통부 장관상



(주)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울**
장관표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상



(주)보문하우징
대표이사 **김채용**
회원사 공로상



(주)건강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회원사 공로상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재준**
회원사 공로상



(주)솔석재
대표이사 **김기광**
회원사 공로상



무성토건(주)
부사장 **김성수**
기술상

부산광역시 2020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부산광역시장상)



(주)진성디이
대표이사 **박철훈**
우수건설업체



녹화조경(주)
대표이사 **김점식**
우수건설업체



광민건설(주)
대표이사 **최형선**
우수건설업체



(주)신아건설
대표이사 **윤정필**
우수건설업체



(주)송인건설산업
대표이사 **이종열**
우수건설업체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우수건설기술인



(주)천진
대표이사 **심재복**
우수건설기술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상



(주)서한기업
대표이사 **서쌍철**
회원사 공로패



(주)일진아이앤씨
대표이사 **강병식**
회원사 공로패



(주)엔텍건설
대표이사 **나영찬**
회원사 공로패



(주)유진에코
대표이사 **김종석**
회원사 공로패



일강건설(주)
대표이사 **정종택**
회원사 공로패



명작건설(주)
대표이사 **박정구**
회원사 공로패



한솔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정현호**
회원사 공로패



서호건설(주)
대표이사 **손이순**
회원사 공로패



(주)서우산업
대표이사 **이준희**
회원사 공로패



(주)엠케이건설
대표이사 **정승태**
회원사 공로패



(주)오승조경건설
대표이사 **허진영**
회원사 공로패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 활동



01 부산광역시 심성태 건설본부장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월 20일 부산광역시 심성태 건설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와 제도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실시공을 전담하는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심성태 건설본부장은 “실시공을 전담하는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부산지역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02 부산광역시 김광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월 27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김광희 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었지만, 실시공을 전담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과 “부득이 종합건설 토목공사업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시 발생하는 포장공사 등은 부대공사에 해당되므로 주된 전문공사인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 김광희 본부장은 “건설공사 분리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03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태휘 소장 간담회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1월 27일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건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대형 민간공사에서 하도급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종합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태휘 소장은 "부산지역 하도급불공정거래 신고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령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04 대형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 투자사업 건설공사」현장 등 지역 내 5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사회는 각 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사업자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05 건설대기업 현장소장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부산 관내 추진사업이 많은 건설대기업(SK건설(주), (주)KCC건설, GS건설(주))의 현장소장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지역에서 건설대기업이 시공 중인 대형건설 현장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및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부산사회는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의 지원을 당부”했으며,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사업자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06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일 전 박형준,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후보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부산전문건설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해 후보자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세원 회장은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와 부산지역 민간건설공사 하도급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함께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간선도로 포장공사 직접시공 행위를 금지하고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는 “협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07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자치구·군 건축과장 간담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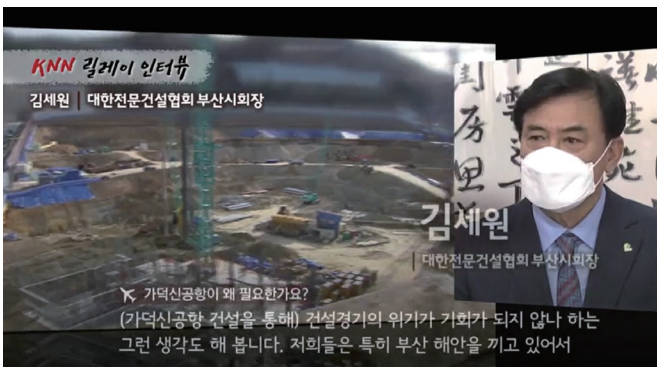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3월 30일 (16:00 /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건설행정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및 16개 구·군청 건축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자치구·군 건축과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전문건설업사업자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줄 것”과 함께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별 하도급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 건설관계관들은 “협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공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산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도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회장 동정



01 김세원 회장 KN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건설업계의 기대감 피력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1월 8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 착공에 따른 부산경제발전과 건설업계의 파급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피력하고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내용은 KNN릴레이 인터뷰 “가덕신공항, 지역의 미래입니다!!”를 통해 방송되었다.

02 김세원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감사 및 특별의원 당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3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 제24대 감사로 선출되어 부산상공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감사 선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우리협회의 대외위상 제고와 부산전문건설업계의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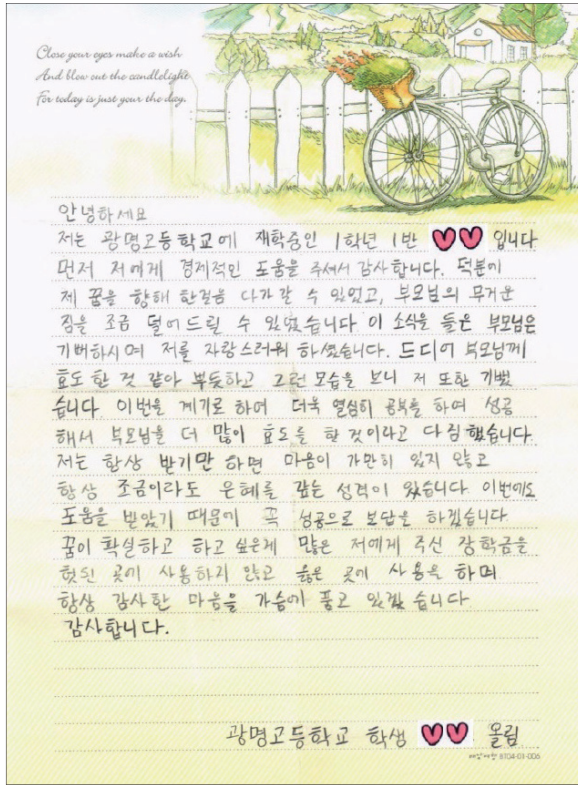
이에 앞서, 3월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서는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이 제24대 특별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특별의원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3년이다.



사회공헌활동

01 교육기부금(장학금) 수여 학생 감사 편지 <두번째>



• 대한전문건설협회 장학금 지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예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중인 ♥♥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안쓰럽고 기특해보였나 봅니다.

그동안 저의 아버지가 건강이 안좋으셔서 오랜 기간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
고, 경제활동을 어머니께서 맡아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
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고등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입하여 나름 다른 학생들을 위
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선생님께서 장학생으로 추천하셨다고 하셨지만 큰 기대를 하지
는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되었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큼니
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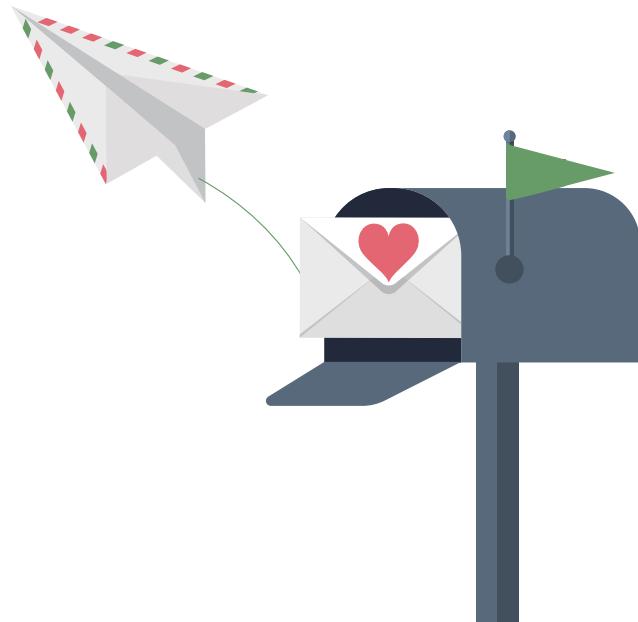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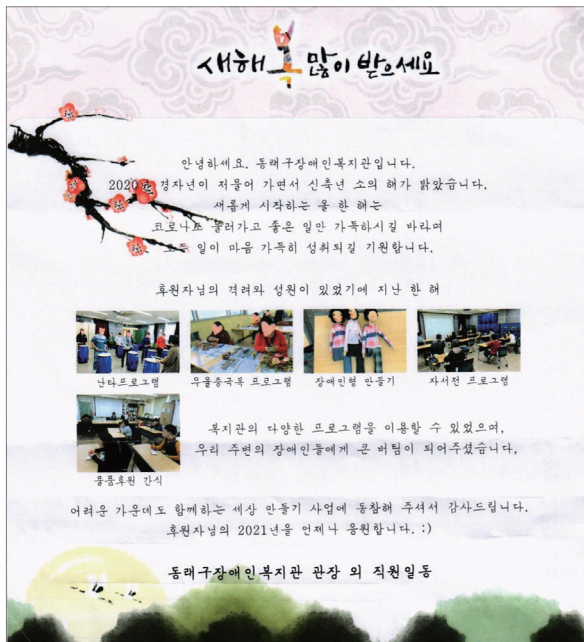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나중에 저도 다
른 사람에게 제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0년 11월 20일

예문여자고등학교
♥♥ 드림.

02 이웃돕기 성금 기부 감사 편지



03 2021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사회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회원사 모두의 온정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2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5,543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은 부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취약계층 생계(연탄지원 등)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2021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회원사 명단

(회장단, 고액, 상호순) (단위 : 원)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3,000,000	28	라이프조경(주)	전종훈	500,000
2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2,000,000	29	(주)봉조건설	조홍제	500,000
3	건진개발(주)	심수율	1,000,000	30	세고엔텍	김윤완	500,000
4	(주)보광	윤영갑	1,000,000	31	영빈건설(주)	김재진	500,000
5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1,000,000	32	옥상건설(주)	박동호	500,000
6	거북건설(주)	이주상	1,000,000	33	일강건설(주)	정종택	500,000
7	(주)거도산업	김창욱	1,000,000	34	(주)주일건설	박강일	500,000
8	(주)덕재건설	김운석	1,000,000	35	(주)진성디이	박철훈	500,000
9	(주)삼성도장	이관옥	1,000,000	36	진성원양건설(주)	윤주영	500,000
10	삼지건설(주)	이태원	1,000,000	37	천지개발(주)	임철규	500,000
11	새벽건설(주)	김정수	1,000,000	38	(주)청복건설	정귀자	500,000
12	(주)서한기업	서쌍철	1,000,000	39	태영건설(주)	박판용	500,000
13	세무법인덕림	김원용	1,000,000	40	(주)테마월드	신수정	500,000
14	(주)신아건설	윤정필	1,000,000	41	(주)사오건설	오태진	450,000
15	은산건설(주)	박병길	1,000,000	42	거북설비(주)	이만호	300,000
16	(주)제일공사	박수근	1,000,000	43	녹화조경(주)	김점식	300,000
17	(주)천진	심재복	1,000,000	44	명작건설(주)	박정구	300,000
18	태영토건(주)	진성희	1,000,000	45	민성건설(주)	서영철	300,000
19	(주)한수유니텍	손영규	1,000,000	46	(주)보문하우징	김채용	300,000
20	홍산건설(주)	신상기	1,000,000	47	(주)부근건설	신종근	300,000
21	(주)홍산건설산업	강용호	1,000,000	48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300,000
22	광평건설(주)	주한식	500,000	49	석봉건설(주)	한상호	300,000
23	(주)다인산업개발	박미란	500,000	50	신신이앤지(주)	고정자	300,000
24	(주)동남엘리베이터	이만규	500,000	51	(주)신홍산업	강신모	300,000
25	동림건설(주)	최문학	500,000	52	야후건설(주)	김병흠	300,000
26	동신조경(주)	이동현	500,000	53	(주)엔텍건설	나영찬	300,000
27	동우건설(주)	이기태	500,000	54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3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55	(주)유영토건	최기남	300,000
56	재은건설(주)	박남이	300,000
57	(주)흥림건설	강갑균	300,000
58	신우개발	김문곤	200,000
59	(주)건양산업	정종원	200,000
60	(주)공간조경	정석봉	200,000
61	(주)금광개발	김진영	200,000
62	(주)금정토건	문준식	200,000
63	금탑건설(주)	이종범	200,000
64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200,000
65	(주)보륜건설	김현재	200,000
66	(주)비케이인테리어	이영기	200,000
67	(주)수우	박철수	200,000
68	(주)수진건설	김승규	200,000
69	(주)신영에버그린	표옥식	200,000
70	신흥건설(주)	정길찬	200,000
71	(주)엠케이건설	정승태	200,000
72	(주)연동	반백철	200,000
73	예인건설(주)	허성규	200,000
74	(주)일상건설	김철호	200,000
75	(주)태웅이앤씨	권태웅	200,000
76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200,000
77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200,000
78	효원산업	김서연	200,000
79	원원건설	전형문	170,000
80	가양건설(주)	김기량	100,000
81	강호건설(주)	강성호	100,000
82	고려토건(주)	이미영	100,000
83	(주)국토건영	차수열	100,000
84	(주)금강고려하우징	권동근	100,000
85	(주)금광환경	김형준	100,000
86	(주)금신건설	문정찬	100,000
87	(주)금아건설	이군범	100,000
88	(주)금호창호	윤석균	100,000
89	(주)기상건설산업	노승창	100,000
90	(주)노은	박노환	1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91	다림조경(주)	이경훈	100,000
92	(주)다용건설	박상용	100,000
93	대경건설(주)	이군희	100,000
94	대고건설(주)	김해숙	100,000
95	(주)대명건설	송종섭	100,000
96	대명토건(주)	강진구	100,000
97	대산건설	신현상	100,000
98	(주)대양디앤씨	이지영	100,000
99	(주)대연아이디	이찬석	100,000
100	(주)대왕석재	양정식	100,000
101	(주)대웅시설안전	성선경	100,000
102	(주)대호스톤	허태암	100,000
103	(주)동서이엔지	손성윤	100,000
104	(주)동신창호	최순자	100,000
105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100,000
106	동우기업	최원용	100,000
107	(주)디노건설	배성훈	100,000
108	(주)디엠플랜	박형용	100,000
109	(주)디케이산업	이순창	100,000
110	(주)마인	정일섭	100,000
111	명륜씨앤디(주)	유수미	100,000
112	명산건설(주)	노은정	100,000
113	범창종합건설(주)	임영희	100,000
114	(주)보성건설	변기홍	100,000
115	부강개발(주)	고천석	100,000
116	부민건설산업(주)	현승훈	100,000
117	(주)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서상복	100,000
118	(주)비엠	배미애	100,000
119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100,000
120	산양건설(주)	정진갑	100,000
121	(주)삼강기업	정은재	100,000
122	(주)삼영건장	조윤설	100,000
123	서연개발(주)	박세웅	100,000
124	서연건설(주)	황경숙	100,000
125	서정건설(주)	이성권	100,000
126	서호건설(주)	손이순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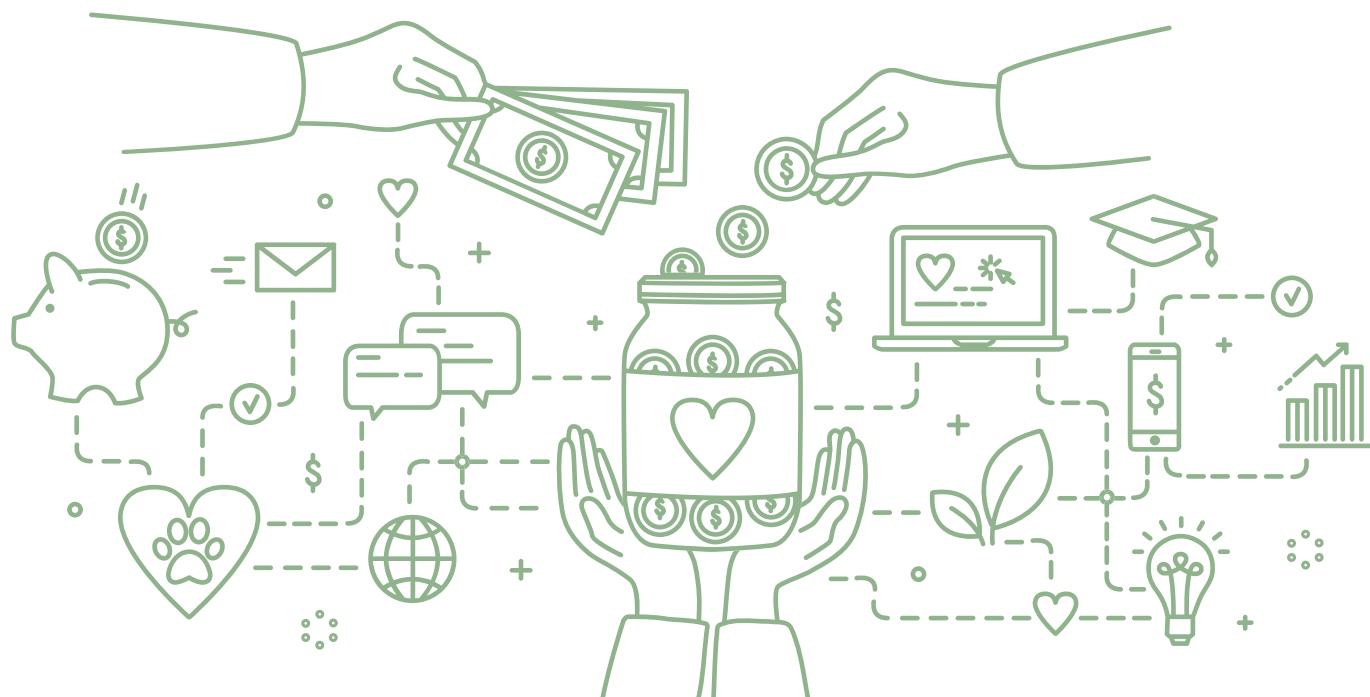
협회 소식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27	(주)선영테크	박훈일	100,000
128	섬진건설(주)	박종열	100,000
129	(주)성심	최민락	100,000
130	(주)성진이노테크	옥성진	100,000
131	(주)성환이앤씨	조운영	100,000
132	(주)세광	엄세현	100,000
133	(주)솔석재	김기광	100,000
134	송화건설(주)	김영운	100,000
135	신창건영(주)	노현숙	100,000
136	(주)씨엠이앤지	이진환	100,000
137	(주)에스디알공간건축	서영준	100,000
138	에스알디자인컴퍼니(주)	홍지영	100,000
139	(주)에스알이테크	김종봉	100,000
140	에스엔케이건설(주)	김장우	100,000
141	엘에스건설(주)	성선옥	100,000
142	(주)에림디자인	고옥돌	100,000
143	(주)우미산업	윤지유	100,000
144	(주)우영이앤지	서진숙	100,000
145	우진조경개발(주)	김준기	100,000
146	(주)원태건설	지미선	100,000
147	(주)유진기업	추태석	100,000
148	유창중건설	김영주	100,000
149	(주)은종산업	김종현	100,000
150	(주)이탁건설	백문기	100,000
151	(주)이화종합건설	이성재	100,000
152	(주)중앙제이에스케이건설	남기웅	100,000
153	지산석재(주)	이남숙	100,000
154	진우공업사	정진석	100,000
155	진옥건설(주)	위성출	100,000
156	(주)창성공영	안병호	100,000
157	청록건설(주)	이태기	100,000
158	(주)청산산업	강성구	100,000
159	(주)태은건설	양현숙	100,000
160	토암건설(주)	남기태	100,000
161	한국라이텍개발(주)	황성도	100,000
162	한림정공(주)	강정민	1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63	(주)한일개발	이종철	100,000
164	한일방식(주)	박재열	100,000
165	해송이앤씨(주)	박인경	100,000
166	해진건설(주)	이상호	100,000
167	(주)해코	이근옥	100,000
168	(주)현대금속	구자천	100,000
169	현서엘리베이터(주)	이평	100,000
170	현운건설(주)	조승희	100,000
171	(주)호연건설	손혜란	100,000
172	(주)화성건설	변용규	100,000
173	화성포장건설(주)	노대환	60,000
174	가산조경개발	조성민	50,000
175	경신산업개발(주)	정순덕	50,000
176	(주)관문건설	김향월	50,000
177	(주)국일에스에프건설	이기덕	50,000
178	(주)남도말물	김세동	50,000
179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50,000
180	다풍건설(주)	태상덕	50,000
181	(주)대명에스씨아이	정현영	50,000
182	(주)대명우드	안정순	50,000
183	(주)대미안건설	주삼대	50,000
184	(주)대석산업개발	박정석	50,000
185	(주)대성건설중기	이상식	50,000
186	(주)대오건설산업	신봉수	50,000
187	(주)대정이앤씨	김미진	50,000
188	대호건설(주)	김승용	50,000
189	(주)도은석재	박진열	50,000
190	동넉디자인(주)	이용철	50,000
191	(주)동명도장	안형필	50,000
192	(주)동해건설	오은주	50,000
193	두풍개발(주)	허승구	50,000
194	(주)모든디자인	윤병곤	50,000
195	(주)무성건설	홍기동	50,000
196	(주)미주건설	박은희	50,000
197	백송산업(주)	강병우	50,000
198	보라건설조경(주)	김성희	5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99	부영ENG	손문기	50,000
200	(주)부영건설	김진출	50,000
201	사람엔건설(주)	이시자	50,000
202	삼성엘리베이터(주)	손대동	50,000
203	(주)서진조경	류향복	50,000
204	설원건설(주)	박정두	50,000
205	(주)성신창업	김홍수	50,000
206	성훈건설(주)	김철훈	50,000
207	센텀엘앤씨(주)	임정민	50,000
208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50,000
209	신한엘리베이터(주)	전진백	50,000
210	(주)씨앤에이토건	안병규	50,000
211	(주)아랑존디	우범용	50,000
212	(주)영진종합토건	박기석	50,000
213	(주)우리하이사시	정선광	50,000
214	위드산업(주)	김남연	50,000
215	(주)위드현대	이종덕	5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216	(주)유건	류영철	50,000
217	유영건설(주)	유상식	50,000
218	은진개발(주)	조종언	50,000
219	장원엔지니어링	백이승	50,000
220	(주)재원에스앤씨건설	이운주	50,000
221	(주)제일협성	박정민	50,000
222	조양건설(주)	박수길	50,000
223	지오인테리어(주)	홍순박	50,000
224	(주)천봉	정지연	50,000
225	(주)태벽건설	백성호	50,000
226	(주)태화건설	김용규	50,000
227	토림조경건설(주)	조옥자	50,000
228	한미피앤씨(주)	김영덕	50,000
229	(주)한서개발	이삼규	50,000
230	(주)해드림	김정용	50,000
231	현복엔지니어링	김양완	50,000
232	(주)호승원스피아	김찬복	50,000
합 계			55,430,000



수주지원

01 2021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를 공사금액 관계없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토록 확대·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9년 4월 24일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단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감사 검토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7일,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02 상하수도 복구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발주 추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된 공사를 결정하고, 이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등에 대하여는 부대공사 여부를 면밀히 따져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념이므로 상수도 부설 및 갱생공사, 상하수도 복구·보수공사 등은 상하수도 관을 매설하거나 보수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써 관매설 및 보수를 위한 토공, 포장공 등은 부대공사로 보아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 발주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공사는 건설공사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만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공사비 확보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보수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인해 기존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 발주되던 상수도 관부설 및 갱생공사, 상·하수도 보수공사, 상·하수도 보수 단가계약 등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함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기업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업역규제 폐지,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전문 시공기술력 향상 등의 취지와는 다르게 종합건설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유권해석과 주요 질의·답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등 타 지역의 경우, 긴급 및 수시적 발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하수도 복구공사(단가계약)를 상호시장 개방이 아닌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14일, 3월 25일 부산광역시청(회계재산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과 전문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상·하수도 보수공사(단가계약 포함) 발주 시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 발주를 추진했다.

03 건축공사 착공 등 건설공사 정보 제공에 따른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으로부터 건설공사 착공정보를 전달받아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및 회원사의 대표 E-mail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등 건설공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부산시회 홈페이지 정보 제공 현황

- 부산광역시 등 주요 발주기관 공공공사 발주계획 현황
- 공동주택 등 입찰정보 현황
- 건설공사 착공정보 현황(각 구·군청별 세부현황)
-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현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화장실 개·보수 및 실내 리모델링 공사 등 발주 시 업역준수 추진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등 1,087곳에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1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등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교사,강당 등 보수공사, 리모델링 등) 발주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수·보강공사 등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회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발주하는 교사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05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사업자 추천

부산시회는 1월 22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 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사업자를 부산광역시에 추천했으며, 대형종합건설사업자의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06 건설공사 설계 시 품의 현실화 추진

부산시회는 1월 25일 부산광역시청(기술심사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및 건축사회 회원, 건설공사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품의 활성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부산광역시(기술심사과)에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정 품의 반영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품의 활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군)청 및 산하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했다.

■ 부산광역시(기술심사과),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활성 적용 협조”

- 적정이윤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내역서 상 설계품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공사 포기에 따른 부정부당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시회는 부산광역시(기술심사과)에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정 품의 반영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품의 활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군)청 및 산하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또한,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건축사회 회원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아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품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 현장 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활성을 설계에 반영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와 사업자 지원을 당부했다.

■ 부산건축사회 회원 및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에 “건설공사 설계 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품의 할증 적용 협조”

-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받아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일률적인 예산절감에 맞춰 설계하기 보다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품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하여 설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건설공사 입찰참가 전 설계서 및 내역서 사전 확인 당부” 회원사에 안내

- 더불어, 시회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사전 열람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적자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중도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07 부산지역 건설공사 부산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지원 협조 추진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민간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원)하도급 참여 확대 협조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들의 기업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형민간건설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중앙1군 대형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받아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가 배제되고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의 자금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역외유출되는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도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하여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29일 부산시 및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더불어 침체된 경기 속에서 부산시 내수활동 촉진에 따른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지역에서 시공 또는 시공예정인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원)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추진했다.

08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 추진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발주 협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 종합과 전문, 전문과 종합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진출이 가능하다.

반면,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사유가 있는 경우(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등)에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발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존 전문공사로 발주하던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지역 2,100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종합·전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과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로 직접시공을 통한 전문시공 기술력 향상 등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현실이라며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2월 1일 부산지역 131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과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와 직접시공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문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기존 전문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동일한 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
-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사의 목적을 우선하여 해당 전문공사로 발주
-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주된 전문공사가 있을 경우, 나머지 공사는 부대공사로 보아 주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종합·전문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09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2월 1일 회원사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모니터링을 통해 일률적, 관행적으로 종합건설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잘못 발주된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정정 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의 경우 정부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과 달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가 타 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부산과 인접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 타 지역 공동주택 공사에도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 입찰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하다.

10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점검 강화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2월 1일 부산광역시청과 16개 구(군)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에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점검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다.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상대시장에서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시공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 마련되어 있기에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전문기술능력과 건설장비를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회는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 낙찰예정인 업체가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다면 해당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입찰의 무효처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계약절차를 반복하는 등 공사일정 치질이 불가피해지기에 이미 시공기술력이 확보된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11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2021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2월 8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21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38 건	32,856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379 건	763,861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42 건	7,710	
4	부산광역시 구군청	662 건	243,464	
5	부산 공기업(공사, 공단 등)	308 건	487,548	
6	중앙 공기업(공사, 공단 등)	193 건	701,148	
7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505 건	213,256	
8	출자·출연기관	20 건	4,056	
계		2,147 건	2,453,899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알림판 또는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에코델타시티 공동21블럭 주택공사 부산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2월 15일 에코델타시티 공동21블럭 주택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노기태 구청장) 및 시행사인 에코델타비에스피에프비(주), 더 파인(주)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수도권 건설대기업들이 도급받아 자사의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며,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수주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지역 생산 자재구매와 지역장비 우선임차, 부산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3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건축물 내·외부 개·보수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 입찰참여 기회 제공 협조 추진

부산시회에서는 2월 24일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건축물 내·외부 개·보수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발주 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 협조를 추진했다.

이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거나,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 또는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여 및 도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4 부산지역 우수 전문·설비건설사업자 Scale Up 지원을 위한 추천

부산시회는 2월 24일 부산광역시(하도급관리팀)와 공동으로 실적 등이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사업자로서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을 선정해 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한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 지역 중소전문·설비건설업 Scale Up 지원사업」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에 3월 19일 최종 18개사가 선정(전문건설사업자 15개사, 설비건설사업자 3개사)되었으며, 향후 참여업체에 대한 부산광역시(하도급관리팀)와 용역기관의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체질 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15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직접시공 근절 추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2006.12.04)에서는 2009년부터 7,000㎡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자체 시공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7,000㎡ 이상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이를 위한 시공비 및 인건비 예산을 상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시회에서는 3월 4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방문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부산시내 간선도로 포장공사의 자체시공 근절 및 직접시공의 규모를 축소화하는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부산시회의 반복적인 건의에 부응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6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 협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안내

발주자 판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참가 제한 가능

전문건설과 종합건설간의 상호시장이 '21년 1월부터 개방되었으나 당초 공정한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채 종합건설의 전문공사 일방 진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는 존립기반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된 공사가 아닌 내역 상의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등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고 발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수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3월 8일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토록 부산 주요발주기관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동시에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되도록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어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공사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유권해석을 전 발주기관에 안내하여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설공사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시·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3월 10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1,060여 곳,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단체, 부산광역시 소재 27개 대학교,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800여 곳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 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시장 난립과 무등록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18 전문공사 발주를 위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시달 추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의 일방적인 전문공사 진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유권해석과 주요 질의·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부산시회는 3월 23일 부산광역시(회계재산담당관실)에 종합과 전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16개 구(군)청 및 산하기관에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시달해 줄 것과 함께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로서만 입찰참여를 제한하여 발주해 줄 것을 추진했다.

- 업역규제 폐지 전 전문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해당 전문 건설업으로 발주
-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24. 1. 1 시행) 2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

- 공사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써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
- 2종 이상의 공종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
- 단가계약 공사는 긴급 및 수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으로만 발주
- 종합공사를 상호시장 개방하여 발주 시 과도하게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토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양(부대공사 제외)

제도개선

01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건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5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기술인의 보유가 많지 않으며 건설공사 1건을 수행할 때마다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등을 구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27일 소규모 건설공사만이라도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품질관리자의 현장 중복 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 건의했다.

02 공공계약제도 개선 의견제출

2021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경영상태 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전문공사 구분없이 종합건설사업자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참여시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평균비율로 평가하고, 전문공사 참여시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산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27일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적격심사 경영 상태가 평가되어 경쟁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참여 시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평균비율로 평가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0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2월 9일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 등급 산정 시 시공 기술능력 심사항목을 산정 기준에 반영

- 개정(안)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의 심사항목을 통해 초급·중급·고급·특급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허위 경력 신고 및 경력 대비 시공 기술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는 만큼, 실제 시공 기술능력보다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실기심사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능인 등급이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0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2월 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대상 현행 유지

- 건설현장 특성상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운용이 예정공정에 따라 투입되는 경우 이외에 일일, 주 단위, 특정기간 등 적시적기에 투입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인이 매번 투입될 때마다 계약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서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임차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따라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도록 건의(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

05 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2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우)에 건의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건설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 노임의 적정성 확보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22조의4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직종별·시기별·지역별 적정 임금 수준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적정노무비 산정은 건설사업자의 임금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자 건설사업자들이 단순 임금전달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여 사업체로서 존립을 위협받게 됨.
- 따라서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할 때 관련 건설사업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06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탄원서 제출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21년 1월 1일부터 공공공사부터 허용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인 소규모 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수주물량의 축소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3월 9일 전문업계의 생존권 수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 법령의 조속 개정 추진을 위해 회원사 대표자가 참여한 탄원서 1,702부를 중앙회에 제출했다.

2021년 1/4분기 신기술 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910(2021.01.19)
- 개발업체: 흥익산업개발(주)

»» 신기술명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 공법

»» 주요 내용

황산에 노출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의 생태학적 보수재 제조 및 이의 시공 기술로, 박테리아가 자기세포 보호를 위해 형성하는 글라이코 칼릭스 막을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에서 황산염 환원 세균들의 생장을 억제하고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열화인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구조물의 황산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킨 단면 보수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11(2021.01.21)
- 개발업체: (주)한국수안,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흥익기술단

»» 신기술명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 주요 내용

외부 유입구를 통해 빗물받이 내부로 우수를 모은 뒤 오염물을 필터부 하단의 침전조에 침전시키며, 빗물받이 내부 우수수위가 증가하면 필터부(4개의 역류관을 포함한 역류유도형 필터통)로 우수가 역류되어 필터통 안쪽 내부 필터여재(부직포)를 통과하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빗물받이 하단에 설치되는 저류조는 저류조의 바닥과 측면(투수시트→쇄석층→투수시트 과정)을 통해 정화된 빗물을 지반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주)서한기업 대표이사 **서 쌍 철**



“
전문건설업은 끈기가
없거나 마음가짐이
대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수더분하고 인정 많은 동네아저씨의 구수한 모습. 서쌍철(66) (주)서한기업 대표의 첫인상은 푸근했다. 경남 마산 내서읍에서 부산으로 온 그의 인생 역정은 가난에 찌든 시골농촌에서의 어린시절, 먹고살기 위해 대도시로 나와 몸부림 치가며 역경을 헤쳐 나간 끝에 어엿한 사업가로 우뚝 선 여느 자수성가 사업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스무 살에 부산에 올라온 그는 형님과 함께 있으면서 잡일을 하며 살던 중 페인트와 인연을 맺게 된다. “형님 지인이 수영에 고급주택을 짓는데 제게 페인트칠을 맡기더군요. 그냥 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결과는 참담했다. 칠이 얼룩져 엉망진창이 되자 집주인이 “집을 다 버려놔다. 물어내라”며 호통을 쳤다. 합판 벽을 잘 닦은 뒤 칠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해버렸으니 사달이 난 게다. 목수가 삐걱 빌어 겨우 위기를 넘겼다. 혼쭐이 난 그는 이때 ‘페인트에 인생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일용직으로 나선 그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쳤다. 하루 종일 일해 봐야 연탄 20장 값밖에 안 될 정도로 박한 일당으로 견뎌야 했다.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뛰면서 일을 배운 그는 좀 더 별기 수월한 수도권으로 진출해 인천 주공아파트 도장공사에 참여하면서 페인트 냄새에 익숙해진 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일생에 기회가 세 번은 온다고 했던가. 마침내 서 대표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 그에게 주례동 주택 페인트 공사가 맡겨졌다. 첫 사업이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벽 4시에 찾아갔다. 하지만 웬걸, 초인종을 눌러도 도무지 소식이 없더라.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집으로 들어가는 주인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주택사업자였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일거리를 계속 맡겨주더군요. 덕분에 수년 후 가게를 내게 됐죠.”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규모도 제법 커져서 철골구조물 공사까지 맡는 등 사업을 키워가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그런데 외환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는 공사비로 받은 여음이 잇따라 부도나면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서 대표는 빚 갚을 방법을 궁리한 끝에 가족을 처가에 맡긴 후 중동 열사의 나라 사우디로 향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생활이 시작됐다. 손에 쥐 한 달 수당이 110만 원. 10만 원을 집에 보내고, 남은 100만 원을 몽땅 모았다. 용돈 한 푼 쓰지 않는 ‘짠돌이’란 달갑잖은 별명도 기꺼이 감내했다. 그렇게 20개월을 보내고 돌아온 그는 빚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생활비조로 보낸 돈을 아내 역시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던 거다. “처형 가게를 도와주며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더군요. 거금 200만 원이 든 통장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돈으로 방을 얻고 가게를 다시 열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또 뛰었고, 마침내 2001년 ‘서한’을 세웠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진득이 묻어있는 이름이었다. “저와 아내의 성을 합해서 만든 거니까요.”

서 대표는 이를 악물고 페인트사업을 밀어붙였고 끝내 이뤄졌다. 2008년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그는 당당히 페인트 부문 3위에 입상했다. 전국 최고 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이어 부산광역시장이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상’도 수상했다.

‘노가다판’을 40년간 주름잡은 그에게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 듯하다. 몸은 칠순을 향해 가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다. 지금도 현장 일손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건설업은 끈기가 없거나 마음가짐이 대단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한파와 새벽의 찬 서리를 이겨낸 건살인 모두가 대단한 분들이죠.”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그도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기술과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추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밖에도 그만의 ‘비밀병기’를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해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중인 상태다.

그에게 포기란 없다. ‘하면 된다’란 신념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금까지 ‘오뎅이 정신’으로 살아왔다. 일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만 나름 정이 많은 사람이다. 지금 그의 사무실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로 이뤄진 대가족이 살고 있다.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강아지 전용방도 준비해 놨다. 그는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출근한다. 회사 장부를 점검하거나 사업 구상에 앞서 동물 가족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한다.

그의 생명존중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 전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길래 수의사를 찾았더니 심장수술을 포함해 치료비가 무려 1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어쩔겠어요. 제가 기르는 생명인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정신이 참 애뜻하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라’.

글 · 최원열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삶인
(주)청복건설 대표이사 정 귀 자



“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친다. 친밀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에서 여성 건삶인의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

상하수도와 철근콘크리트 사업에 몸담고 있는 정귀자(64) (주)청복건설 대표. 남편이 3대째 토목을 업으로 삼고 있고, 친동생 역시 울산에서 내로라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경영하는 그야말로 ‘토목바라기’ 집안이다.

그런데 그 역시 거친 토목 사업에 뛰어 들었다. 1995년 봉조건설을 설립해 3년간 열심히 뛰었다. “봉조란 이름은 주위의 많은 벗들이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들이 서로 나서 카드를 긁어 돈을 빌려주더군요. 차를 몰고 와서 현장에 기계를 운반해주기도 했어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는 '배움'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토목이라는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은 다른 차원이라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었다. 웅골찬 여장부로서의 기상이 여기서 드러난다. 어떻게 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그는 곧장 실천으로 옮겼다. 자녀 둘을 둔 전업 가정주부가 야간대학 토목과에 입학했다. 낮에는 남편 회사 경리를 보면서 자식들을 돌봐야 했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만학도의 꿈을 키워갔다.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의 힘든 생활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정 대표는 2010년 대망의 청복건설을 설립한다. 맑을 청(淸), 복 복(福). 맑고 깨끗한 물을 부산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회사에 복이 한가득 들어차기를 바라는 뜻에서 붙였다. 이후 실제로 행운이 쏟아졌다. 연간 단위의 관급공사를 6년 연속 따냈던 거다. 매달 고정수입이 들어오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다른 업체들이 겪는 인부난도 피할 수 있었다. "몇 개월 단위의 공사를 맡으면 공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매달 임금을 줄 수 있으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낙찰운이 이처럼 좋은 까닭을 물었다. 그가 첫째로 꼽은 게 입찰 전 목욕재계 후 하는 1천 배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절을 하고나면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마음을 맑게 해서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일도 있었다. 1,2공구로 나뉜 공사 입찰이 모두 그에게 낙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한 건은 제가 탈락했는데 낙찰업체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먹는 바람에 행운이 저에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는 영험한 꿈도 꾸다고 귀띔했다. "두 건이 한꺼번에 낙찰된 전날 밤 외계인 같은 존재가 나타나더니 저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더군요." 그 덕에 6년 연속 연간 공사를 따내는 행운을 안았고, 부산에 소문이 났다. '낙찰의 여신이 나타났다'나. 정 대표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으려고 악수를 청하거나 옷깃을 잡으려고 아우성 이었다고. 물론 농담이지만 '기가 빠진다'며 거절했다.

그의 비결을 단순히 미신적인 성격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정 대표는 입찰이 있으면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범인이라면 너무나 힘든 1천 배를 해내니까. 그러나 행운의 덕 이전에 '하면 된다'는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의 자세를 지녔기에 그런 행운을 품에 안았을 게다. 울 들어 아직 연간 공사를 따내지 못했지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있으니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정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꼭 지키는 철칙이 있다. 하청을 받지 않는 거다. 오로지 관급공사만 맡는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저가입찰이 싫습니다. 게다가 원청업체의 부도, 도산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땀 흘려 공사해서 제값을 받아야지요."

그는 사회봉사와 자선 행사에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선다. 부산 여성경제인협회와 법무부 복지공단 임원으로 있으면서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합동결혼식도 주선하고 매년 적지 않은 돈을 후원해 재소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준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받을 다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가 잘 걷지를 못해 보기 안쓰럽더라. 더구나 집 앞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해 고생한다는 말을 들은 정 대표는 해외직구를 통해 맞춤형 보행보조기를 선물했다며 활짝 웃었다.

그의 좌우명은 '항상 처음처럼'. 어렵사리 사업을 시작했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며 성장했다. 주위의 도움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됐다.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 대표는 빨셈의 경제논리를 터득한 듯하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덧셈의 단계에서 '나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는 빨셈의 차원으로 올라선 게 아닌가 싶다.

문득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삶은 갖기 위한 것(for getting)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for giving)이니 그렇게 하려면 관용을 베풀어야(forgiving)한다'.

글 · 최원열



IMPORTAN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01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종 개편,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01 전문건설업종 개편

- **업종 수** : 29개 업종 → 14개 업종 (영 별표1)
-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원, 기술인력 2인* (영 별표 2)
 - * 예외) 포장(3인), 철도궤도(5인), 철강구조물(4인), 준설(5인), 삭도(3인)를 주력분야로 지정받는 경우는 주력분야 기술능력·시설·장비기준을 충족
- **시행시기** : 통합 전문업종은 '22. 1. 1 부터 시행 (영 부칙 제1조)
 - 공공공사 : 22.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민간은 대업종 또는 종전 업종)
 - 민간공사 : '23. 1. 1 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종전에 등록된 업종은 통합된 업종으로 전환됨
 - 주력분야의 경우 종전에 등록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가 주력분야로 등록됨
 - *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제외

02 주력분야 등록 및 업무범위

- **등록신청** : 건설업 등록 시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분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영 제7조의2)
- **구분기준** : 현재 전문업종(27개) 기준으로 분류 (영 별표 2)
- **지정요건** : 2개 이상 주력분야 지정 시 기술자 1인 중복인정(영 제16조제5항)
- **업무범위 제한** :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 지정을 받아야만 수행 가능한 공사 종류 명시 (별표1 비고 제4호)
 - 수중 준설공사, 승강기·삭도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가스2종·3종, 난방 1·2·3종)

03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 **유효기간** : '23. 12. 31 까지 효력을 가짐 (영 부칙 제2조)
- **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제6항)**
 - 업종 전환(전문 또는 종합)후에도 종전 시설물 지위(입찰참가자격) 인정
- **자율 전환시 특례 (영 부칙 제6조)**
 - 자율전환 기간 : '22. 1. 1 ~ '23. 12. 31
 - 전환가능 업종 : 전문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종으로 전환가능
 - *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콘, 상하수도
 - 등록기준 유예 : 자율전환 기간 내 전문 또는 종합업종으로 전환 시 3년간('24~'26) 등록기준 충족 유예 (영 부칙 제6조 제3항)

- 영세업체 등록기준 추가 3년 유예 (안 부칙 제6조 제4항)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7~'29까지 추가유예
 - * 시평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업체 ('21년 초 고시 예정)
- 등록기준 심사 관련 (부칙 제6조제5항)
 - 유예기간 만료날('26.12월 또는 영세업체의 경우 '29. 12월)까지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관청 및 주
력분야 지정 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 특례 적용 대상 (부칙 제6조제1항)
 - 입법예고일('20. 9. 16)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
- 자율전환 혜택 및 영세업체 보호제도 근거 마련(영 부칙 제6조제4항)
 - 전환실적 가감산 등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 및 추가 특례

- 적용대상 : 영 시행('22.1) 이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업종전환 또는 추가 등록을
'21. 12. 31 까지 등록관청에 신청(영 부칙 제5조제1항)
- 업종 전환 및 업종추가 관련(영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 ① 업종전환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
 - ② 업종추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요건 : 3년간('18~'20)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실적이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 등록기준 유예 : 업종 추가에 따른 등록기준 유예*
 - * 등록기준 충족 : '24. 12. 31 까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함
- 실적전환 : 업종전환 또는 추가한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적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적으로
전환 할 수 있음(영 부칙 제5조 제4항)

05 시범사업

- 대업종 시행('22.1월) 전에 국가·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발주공사에 대해 시
범사업 실시 (영 부칙 제4조)

06 업종개편에 따른 다른 법령 개정사항

- 14개 전문건설업종은 개편된 전문건설업종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
사(제3종) 주력분야 등록한 자 인용 (부칙 제9조제2항)
- 유효기간 만료일('23. 12. 3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부칙 제6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한 건설사업자를 인용 (부칙 제9조제3항)

07 시행일 : 2021.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안내**

부산시회는 2021년도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주52시간)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1. 1. 1 부터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적용되며, '21. 7.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 300인 이상('18. 7. 1 시행), 50인 이상('20. 1. 1 시행), 5인 이상('21. 7. 1 시행)
-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적용
 - 300인 이상('20. 1. 1 시행), 30인 이상('21. 1. 1 시행), 5인 이상('22. 1. 1 시행)
-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적용**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 **건설업 노무비율 전년도와 동일**
 - 일반건설공사(원도급)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공사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건설업 월평균보수액 4,330,442원 (2.46% 상승)**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1.6%, 산재보험료율 3.7% 적용**
- **건설업 국민연금료율 9%(전년도와 동일)**
- **건강보험료율 6.86%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가 '20. 11. 27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1. 5. 26 까지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 : '20. 11. 27 부터 시행
 -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 '22. 7. 1 부터 시행
 -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 '24. 1. 1 부터 시행
 -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자카드 발급, 단말기 설치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운영 중 ('20. 11. 27 ~ '21. 5. 26)
- **건설기능인 기능인등급제 도입('21. 5. 27 시행)**
 -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21. 5. 27 부터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 세부내용 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MPORTANT

(제21대 국회)
노동관계법 개정·공포
안내

제21대 국회에서는 건설업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을 개정·공포('21. 1. 5)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가(제51조의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설
- 단위기간 : (현행) 2주 단위, 3개월 이내 + (추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활용조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제52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설
- 정산기간 : (현행) 1개월 이내 + (추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
-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 건강보호(제53조 제7항)**
- **근로조건 명시 서면교부 방법 확대(제17조 제2항)**
- **근로자명부 작성 예외 근거 신설(제41조 제1항 단서)**
※ 시행일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2021. 4. 6 부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2021. 7. 1 부터
- 제53조 제7항 : 2021. 4. 6 부터
- 제17조 제2항, 제41조 제1항 : 2021. 1. 5 부터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내용

- **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비종사자 노조활동 제한적 허용(제5조 제2항)**
- **단체교섭 유효기간 확대(제32조) : 최대 2년 ⇒ 최대 3년**
- **사용자 조업을 방해하는 징의행위 금지(제37조 제3항)**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제24조 제1항, 제2항)**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무효(제24조 제3항, 제4항)**
※ 시행일 : 2021. 7. 6 부터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 당연가입(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등)**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시행일 : 2021. 7. 1 부터

산재보상법 주요 개정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제125조 제4항)

특고의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한

※ 시행일 : 2021. 7.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01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원사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 조정 신청이 가능한 원사업자의 적용범위

(현행) 대기업 또는 연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 (개정)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

■ 별점제도 개선

- 자발적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유도를 위한 경감기준 정비

• 항목 삭제(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및 신설*

* 건설하도급 입찰정보공개(1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2점),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체(3점),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별점의 최대 50%)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 합리화

* 표준계약서, (현행) 100% 사용 시 2점 → (개정) 90% 이상 2점, 70%~90% 미만 1점

** 발주자직불, (현행) 100% 직불 시 0.5점 → (개정) 50% 이상 1점, 50% 미만 0.5점

※ 특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감액금지, 기술유용, 보복조치)에 별점 5.1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현행 유지

■ 중소 원사업자 부담완화

-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 45억 원 (제조) 매출액 20억 원 → 30억 원

■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받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내역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 가능

**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 등이 관련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주거나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02 시행일 : 2022.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IMPORTAN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안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따른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특히,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전문·종합공사 구분없이 일원화 하면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예정가격 대비 상향(86.745% → 87.745%) 조정하고, 적격심사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실적'에서 '최근 3년 이상 실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2020.12.24)】

01 주요내용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낙찰률 상향 조정

- 예정가격 대비 86.745% → 87.745%

■ 종합·전문공사의 금액별 평가 구간 일원화

추정가격	시공경험 평가기준				낙찰률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배점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실적	13.5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	15	86.745%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	1.5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실적	13.5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	15	86.745%
	최근 5년간 동일업종 실적	1.5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실적	9	최근 3년 이상 동일업종 실적	10	87.745%
	최근 3년 이상 동일업종 실적	1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실적	5	최근 3년 이상 동일업종 실적	5	87.745%
2억 원 미만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실적	4.8	최근 3년 이상 동일업종 실적	4.8	87.745%

- 최근 3년 이상 동일업종 실적 인정기준이란?

(예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실적 + 2020. 1. 1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전체공사의 준공이 완료된 공사 실적(발주처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인정) 합산

■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 2021. 4. 1 부터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금액으로 평가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신설

- 시공경험평가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시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표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
-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시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단, 10% 이상의 실적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 경영상태평가(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단,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2021. 6. 30 까지 적용)
(유동비율 : 149.15%, 부채비율 : 95.86%)

- 경영상태평가(영업기간)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 신인도 평가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 항목은 0.2점을 부여

-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상호협력평가는 0.3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 부여

-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상호시장에 참여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배점한도 부여. 단,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

- 시공품질 평가

-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

- 주계약자 공동도급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

-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여부 결정

-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02 시행일 : 2021. 1. 1 부터

※ 입찰가격 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 : 2021. 4.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8호(2021.1.19)]

0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축소(제89조 제2항)
 - (기존)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
 - (개정)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

02 시행일 : 2021. 1. 1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동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등을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2021.1.26)]

01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제2조제2호)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법 적용 범위 규정(제3조)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는 법 적용을 제외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제4, 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조치해야 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의무 규정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제6조)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 벌금 병과 가능)
 - (사망 외 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5년 이내 재범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 양벌규정(제7조)
 -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재해) 10억 원 이하 벌금
- 손해배상 책임 규정(제15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02 시행일 : 2022. 1. 27 부터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2024. 1. 27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 변경 고시 안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되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2021.1.21)]

01 주요내용

■ 일반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호)

(단위 : 만원)

항목 \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 소액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 원

02 시행일 : 2021. 1. 2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2021.3.16)]

01 주요내용

■ 용어 변경(제2조 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인의 부당요구 신고(제22조의3 신설)

-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신설)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 검토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제62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

02 시행일 : 2021. 6. 17 부터

※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등 : 2021. 9. 17 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2019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 자료 안내**

부산시회는 전문 하도급 공사의 투입원가를 대상으로 완성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현황을 분석한 「2019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주요내용

- 조사개요
- 2019년도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 개황
- 2019년도 완성공사 원가통계
 - 종합원가계산서
 - 공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 업종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 공종별 업종별 원가계산서
 - 공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 업종별 공사기간별 원가계산서
 - 공종별 공사기간별 공사규모별 원가계산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2021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21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계수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2021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참고하면 된다.

03

건설현장 매뉴얼 안내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손쉽게 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건설현장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기에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안내했다.

- 거푸집 공사 현장 매뉴얼
- 도배 공사 현장 매뉴얼
- 도장 공사 현장 매뉴얼
- 방수 공사 현장 매뉴얼
- 타일 공사 현장 매뉴얼

※ 각 매뉴얼 세부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3월부터 패트를 점검 강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 부실 건설업체 집중관리 방침」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내 사망사고 발생 업체가 시공하는 고위험현장*은 안전공단의 방지계획서 이행확인 주기를 단축하여 매월 1회 이상 확인
 - 안전공단은 방지계획서 이행 부실현장에 대해 행정명령*, 감독을 지방관서에 적극 요청, 지방관서는 필요한 조치 확행
 - *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명령
- **(발주자 안전보건 대장)** 지방관서는 50억 이상 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의무 이행 안내 및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시공현장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안전공단은 방지계획서 심사 시 발주자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
 - *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을 방지계획서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안내, 미제출 시 심사유보 및 지방관서 통보
- **(자율안전 컨설팅)**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은 자율안전 컨설팅 승인 대상에서 제외
- **(본사 안전보건계획)**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집중 지도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제출받아 확인 후, 부실한 경우 보완토록 지도
- **(패트를 점검)** 안전공단 패트를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기술지도대상 중소규모 현장 등 안전관리 부실 우려 현장* 위주로 집중 실시

 - * ① 최근 3년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 ② 사고성 중상해 2명 발생 현장
 - ③ 신규업체(20년 이후 설립 등) 시공현장
 - ④ 하위등급평가 기술지도기관 지도 현장 등
 - 패트를 점검 시 기술지도 적정성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지방관서에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 * 기술지도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기술지도 내용 불이행 건설 현장 감독 등

02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조치

- **(부실 건설업체)**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관리* 실시

* 특별관리: 본사 및 소속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 안전진단·개선계획 수립 명령, 안전보건계획 보완 후 이사회 수정 보고,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패키지로 조치

- **(그 외 건설업체)** 1차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 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실시, 감독 중 적발된 안전조치 미비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한 내 개선하고 미개선 시 작업중지 조치

- 또한, 본사가 모든 현장의 재해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하고, 2차 발생 시부터 즉시 특별관리 실시

* 50대 건설사는 고용부 본부에 직접 보고, 그 외 업체는 본사 관할 지방청 보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대한 사용 자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 장비 중 결함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12개 기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정조치 또는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조치하였기에 부산사회는 회원사에 이를 안내하며, 해당 장비의 사용자제와 안전성 확인 및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기준 부적합 타워크레인 현황

구분	기종
등록말소 (3개 기종)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시정조치 (9개 기종)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L48A, CCTL150-L68B2, CCTL150A

※ 각 기종별 세부 결함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및 경영상태
평균비율 안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21건

국도교통부는 '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원활한 시장안착 등을 위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2월 19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 및 대업종화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시범사업 개요

- '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원활한 시장안착 등을 위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총 21건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 시범사업 21건 (국도관리청 9건, 도로공사 6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2건, 공항공사 2건)

연번	유형 (업종수)	기관명	사업명	공사 종류	공종	업무분야	공사비 (억원)	발주 예상 시기	시범사업 공종 (종합/전문)
1	유형1 (3개→2개)	대전청 보은국도	행정교차로 개선공사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11	'21.3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2	유형1 (3개→2개)	익산청 광주국도	개신지구 교차로개선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11	'21.3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3	유형1 (3개→2개)	도로공사	일죽IC 진출연결로 개량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8	'21.3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4	유형1 (3개→2개)	도로공사	남해제1지선 폐도복원	종합	조경	-토공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7	'21.3	종합 (지반조성·포장 조경식재·시설물)
5	유형1 (3개→2개)	공항공사	무안공항 주차장확장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조경식재	60	'21.2	종합 (지반조성·포장 조경식재·시설물)
6	유형1 (4개→3개)	익산청 전주국도	통석교차로 개선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금속구조물	15	'21.2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금속창호· 지붕건축)
7	유형1 (4개→3개)	도로공사	남세종영업소 회차로개량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금속구조물	75	'21.4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금속창호· 지붕건축)
8	유형1 (4개→3개)	서울청 수원국도	소구조물 정비공사	종합	토목	-토공 -포장 -철콘 -금속구조물	4.5	'21.4	종합 (지반조성·포장, 철콘, 금속창호· 지붕건축)

연번	유형 (업종수)	기관명	사업명	공사 종류	공종	업무분야	공사비 (억원)	발주 예상 시기	시범사업 공종 (종합/전문)
9	유형1 (7개→5개)	철도공단	한강철교 초소 시설개선	종합	건축	-철콘 -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지붕판금 -도장 -습식방수 -기계설비	16	'21.2	종합 (철콘,철강구조물, 금속창호· 지붕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계설비)
10	유형2 (2개→1개)	익산청 남원국토	부체도로 정비공사	종합	토목	-토공 -포장공	5	'21.3	전문 (지반조성·포장)
11	유형2 (2개→1개)	철도공사	양주역 흙지붕 보수	종합	건축	-습식방수 -도장	8.8	'21.2	전문 (도장·습식방수· 석공)
12	유형2 (2개→1개)	도로공사	문의휴게소 조경	종합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16	'21.2	전문 (조경식재·시설물)
13	유형2 (2개→1개)	도로공사	강릉휴게소 노후휴게시설 보강	종합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3	'21.4	전문 (조경식재·시설물)
14	유형3 (1개→1개)	부산청 영주국토	불정1교 교면포장보수	전문	토목	-포장	1	'21.2	전문 (지반조성·포장)
15	유형3 (1개→1개)	공항공사	김해공항 포장보수	전문	토목	-포장	11	'21.3	전문 (지반조성·포장)
16	유형3 (1개→1개)	도로공사	강릉지사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전문	토목	-포장	6	'21.3	전문 (지반조성·포장)
17	유형3 (1개→1개)	서울청 수원국토	차선도색	전문	토목	-도장	2	'21.3	전문 (도장·습식방수· 석공)
18	유형3 (1개→1개)	익산청 광주국토	교량 도장공사	전문	토목	-도장	30	'21.2	전문 (도장·습식방수· 석공)
19	유형3 (1개→1개)	부산청 진영국토	울주군 안전시설물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3	'21.3	전문 (금속창호· 지붕건축)
20	유형3 (1개→1개)	철도공사	경전선 49개소 울타리 설치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6	'21.3	전문 (금속창호· 지붕건축)
21	유형3 (1개→1개)	철도공단	익산역 외 3개소 방음벽 설치	전문	토목	-금속구조물	41	'21.2	전문 (금속창호· 지붕건축)

02 시범사업 유형

- (유형1)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여 발주(10건)
- (유형2)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4건)
- (유형3)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8건)

구분	기존	대업종화 시범사업
유형1 (종합공사)	종합공사(4개 업종) 토공/포장/도장/방수	종합공사(2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도장·습식·방수·석공
유형2 (전문공사)	종합공사(2개 업종)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	전문공사(1개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설치
유형3 (전문공사)	전문공사(1개 업종) 도장	전문공사(1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

※ 입찰참가 조건(등록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여 가능

03 입찰참가 조건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 직접시공 원칙 적용

04 적격심사 평가기준

■ 시공경험 평가(실적평가)

- 기존 전문업종별 실적을 대업종별로 합산하여 평가

<예시>	보유실적	대업종화 실적 인정
유형1 (종합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건축분야 5억, 토목분야 3억) • 포장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0억) • 도장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2억) • 방수 (건축분야 0억, 토목분야 0억) • 석공 (건축분야 2억, 토목분야 5억)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에 따라 토목분야 로 구성된 실적 인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지반조성·포장공사업(3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도장·습식·방수·석공(7억)</div>
유형2 (전문공사)	조경식재(5억) 조경시설물(0억)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5억)
유형3 (전문공사)	도장(0억) 습식·방수(2억) 석공(3억)	도장·습식·방수·석공(5억)

※ 단, 현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공사에 대한 실적 구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범사업의 경우 파일공사의 실적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방법

구분	경영상태 평가기준			
유형1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부채비율 : 95.86%, 유동비율 : 149.15%			
유형2, 3 (전문공사)	<업종별(대업종화)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현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적용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토공사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69.03%	182.72%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금속구조물·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7.78%	142.34%
	지붕판금·건축물조립			
	도장공사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73.05%	159.40%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84.87%	115.5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131.35%	136.66%
	철강재설치공사			
	수중공사	수중·준설공사업	135.68%	131.67%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승강기·삭도공사업	75.77%	116.44%	
삭도설치공사				

※ 적용대상 공사 :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전문공사

※ 적용기간 :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시부터 '21. 6월 말까지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5 실적 확인 서류 발급·제출 사항

■ (종합공사 입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확인【대업종화 시범사업-종합공사 입찰용】발급·제출

■ (전문공사 입찰)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신청)서【대업종화 시범사업-전문공사 입찰용】발급·제출

06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기준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사업자의 주요
신고·통보제도 이행
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2월 19일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특히,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시 최근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빠짐없이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 30만 원, 2차 : 50만 원, 3차 이상 : 50만 원

0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작성(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권고
- 위반 시 제재사항
 - 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150만 원(동법 제99조제2호)
 - ※ 단,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과태료 50만 원(동법 제99조 제2호)

03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이상 : 400만 원(동법 제99조 제3호)
 -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에 주의 요구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3항, 시행령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 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함.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면제 기준
 - 1건의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 : 시정명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 시정명령 불이행시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제3호)

0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령 제64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0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제8호)

- 0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시행령 제64조의 4, 시행규칙 제34조의 5)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시행령 89조 별표7의 서목)
 - 과태료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이상 : 300만 원

- 07 하도급 등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 100만 원, 2차 : 150만 원, 3차 이상 : 150만 원

- 0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신고**(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발생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의 사항을 2시간 이내 통보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전화·팩스 및 기타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활용 가능
 - 위반 시 제재사항(동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 과태료 1차 : 200만 원, 2차 : 250만 원, 3차 이상 : 300만 원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및 납부 안내

부산시회는 3월 1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건설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건설현장을 분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 신고 시 월 8일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건

- ①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② 계약서에 보험료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제출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② 사업장강비자격취득신고서
- ③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와 관계없이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추후 공단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 추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회원사에게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가 반드시 선행(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는 별개)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09

「2021년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상호 동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호혜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상생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회원사의 원활한 노무관리를 지원하고자 「2021년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사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현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상호시장 진출 대응 TF팀 구성 안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종합 상호시장 진출허용이 '21.1.1 공공공사 발주분부터 적용되고 있음에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발주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부당발주 사례를 조속히 시정하고 대정부 건의 등 제도개선 자료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1월부터 중앙회와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와 더불어 TF 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활발한 TF팀 활동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실시간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의견교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며, 적기에 발주시정을 요구하는 등 생산체계 개편에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안내**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년대비 20% 감축 목표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전년대비 20% 감축('21년 360명)하고, 건설 전반에 안전중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고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회는 국토교통부의 협조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요내용

-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및 건설기계 깔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해빙기 지반침하 및 유실 등으로 인한 건설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중점점검과 예찰활동 강화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의결 및
권고조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협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중소기업권익보호 방안을 의결(제2021-84호, 2021. 2. 8)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교육감 등에 개선할 것을 권고조치 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주요내용

-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등 방지를 위해 기초금액 산정내역의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
 - 기초금액 산정내역 공개대상 : 기초금액의 총액, 공정별 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의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지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에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 및 부담방식(계약 당사자 각 50% 부담) 명시
- 고재의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고재처리비용을 재료비에서 공제
 -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되는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정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토록 개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 회원사에 안내했다.

■ 그린리모델링이란?

-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래된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등록

- 분기별 1회 이상 등록요건 부합여부 확인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 등록신청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동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 유효기간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 문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031-738-4963, 1600-1004)

건설현장 코로나19 신고센터 운영 안내

부산시회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사중단을 포함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코로나19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회원사에 안내했다.

■ 접수방법

- ①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접속
- ② 홈페이지 하단 「코로나19 회원사 피해현황 접수」 클릭
- ③ 일반피해(공사중단 제외) / 공사중단 구분하여 해당 서식 다운로드
- ④ 피해현황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FAX) 02-3284-1028

- (E-mail) sh6652@kosca.or.kr 또는 sungin@kosca.or.kr

- 접수내용은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본부 건설반 보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국적을 구분하여 보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모집
공고 안내**

부산사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모집을 사전 파악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모집일정 (결과통보)	협력업체 자격요건	등록신청 방법	문의처
대림 건설 (주)	2021. 2. 1(월) ~ 상시모집 (신청 후 3주 이내)	신용평가등급 : B이상, 현금흐름등급 : C-이상 ※ 신용평가기관 :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홈페이지(www.bidplaza.co.kr) 회원가입 및 등록심사요청	외주동반성장팀 이창균 차장, 윤덕우 사원 (02-2170-5180 / 5178)
(주) 케이 씨씨 건설	2021. 3. 22(월) ~ 4. 30(금) (2021. 6월 중)	① 신용평가등급 :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 C+ 이상 ※ 이크레더블 기준, 2020년 재무제표 반영된 신용평가서 기준 ② 2018~2020년도 건설실적 보유업체, 등록공종 관련 면허등록일 기준으로 만2년이 경과한 업체	(주)케이씨씨건설 협력업체시스템 (https://partner.kccworld.net) 회원가입 후 정기업체 등록 신청 ※ 방문접수 불가	○토목부문 : 김무진, 한규상 (02-513-5634,5648) ○건축부문 : 조형근, 임형택, 최찬 (02-513-5643, 5645, 5678)
두산 건설 (주)	2021. 4. 1(목) ~ 4. 30(금) (2021. 6. 16(수) 예정)	① 신용평가 B+ 이상 ② 현금흐름등급 C+ 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③ 부채비율 250% 미만 ④ 설립연수 3년 이상 ⑤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 이내	두산건설(주) 협업포탈 (https://partner.doosanenc.com) 접속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신청 ※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고 '협력업체 신청 확인서'까지 출력되어야 정상 등록되며, 협력사에서 선택한 주거래 SG(공종) 1개 공종으로 평가 (부거래 SG는 복수 선택하여 추가 가능)	두산건설 외주/구매팀 조준희 과장(02-510-3329)
(주) 한화 건설	2021. 4. 1(목) ~ 4. 30(금) (2021. 6월 중)	①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실적 보유업체 (모집공종에 한함 ※ 모집공종과 신규협력사 신청공종이 상이할 경우, 평가 없이 탈락 ② 기업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CR-4)이상 ※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 데이터 등 ③ 온라인 신용평가서 ④ 상·하반기 신용평가서 및 건설실적보고서 업데이트	(주)한화건설 협력사 포탈에 (www.edreams21.co.kr) 접속하여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신청 ※ 협력사 포탈사이트 공지사항 "2021년 한화건설 신규협력사 모집안내" 참조	한화건설 외주팀 ○토목부문 : 02-729-5772 ○건축부문 : 02-729-5767)
한신 공영 (주)	2021. 4. 19(월) ~5. 14(금)	① 2020 결산자료를 토대로 신용평가기관 이크레더블 또 는 나이스디앤비의 평가를 받은 업체 - 외주 : 기업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부채비율 150% 이하 - 자재 : 기업신용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② 영업기간 3년 이상 ③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전체의 40% 이내(외주) ④ 3년간 실적누계금액이 시평액의 1.0배 이상(외주)	한신공영(주) 전자조달시스템 (http://hseps.hanshinc.com) 「평가시스템」으로 접수	한신공영(주) 공무부 ○토목부문 : 02-3393-3208, 3203, 3205, 3192 ○건축부문 : 02-3393-3202, 3198, 3195, 3197, 3209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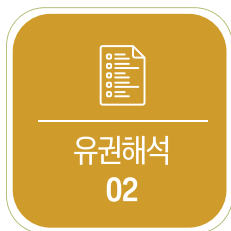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공사 발주 시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 판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도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1076, 2021. 2. 26



국토교통부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근거: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271, 2021. 2. 8)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가능한지?

(예시) 실내건축 60%, 습식·방수 40%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호*)

*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

- ?
Q3.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
 - !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확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

- ?
판시사항
- 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이요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02**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판결요지
- 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 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 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02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목소리 변화로 발견된 악성종양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심한 독감(상기도감염)에 의해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는데, 2주일 이상 잘 낫지 않는 목소리 변화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강좌에는 목소리 변화를 주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PET/CT(양전자방출단층영상)를 통해 악성종양이 진단된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목소리가 쉬어서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한 가정주부인 C씨(56세, 여)는 후두경(후두 진단에 쓰이는 거울)으로 왼쪽 성대의 마비가 있었으나, 성대 자체에는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목부위 CT 촬영 결과 갑상샘의 종양이 의심되어, PET/CT를 시행하게 되었다. C씨는 당분과 유사한 물질인 방사성의약품 F-18-FDG를 주사하고 시행하는 PET/CT에서 왼쪽 갑상샘의 결절(화살표)이 발견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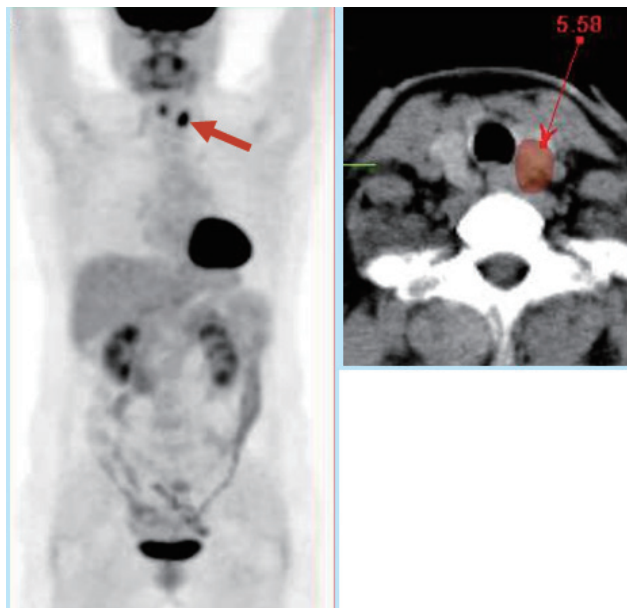


그림 1. 왼쪽 갑상샘의 결절(화살표)이 발견된 PET/CT

C씨는 왼쪽 갑상샘에 생긴 악성 종괴가 '되돌이 후두신경(후두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는 기관식도 고랑(tracheoesophageal groove)을 침범해 왼쪽 성대가 마비되었고, 조직검사서서 유행형 갑상샘암으로 확진되었다. 이 사례는 목소리 변화가 갑상샘 종양에 의해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침범되어 생긴 경우였다.

사례 2

교사인 P씨(40세, 남)는 두 달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계속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가 증가된 소견이 보여서 PET/CT를 직접 촬영하게 된 경우이다.

이전에 촬영한 가슴 사진은 정상이었었는데, PET/CT 영상에서 보이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다량 집적되는 병소 위치(화살표)가 폐문과 대동맥 주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사진에서 발견되기 어려웠다(그림 2). 20세부터 하루 한 갑씩 20갑년(Pack-year-smoking) 흡연력이 있었던 P씨는 폐암으로 진단되어,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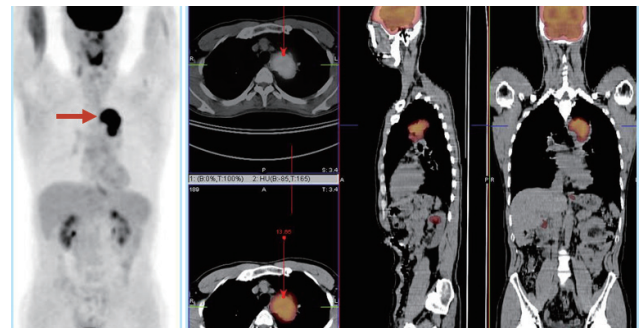


그림 2. 방사성동위원소가 폐문과 대동맥주위에 다량 집적되는(화살표) PET/CT

이 경우는 목소리가 쉰 것이 계속적으로 성대를 사용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폐암 조직이 왼쪽 되돌이 후두신경을 침범 또는 압박해서 목소리 변화가 나타난 흔하지 않은 사례다.

이와 같이 2주 이상 지속하는 목소리 이상은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병변이 단순 가슴촬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

흡연력이나 공해 물질(석면 등)에 노출된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영상 진단은 물론이고, 폐암의 상대적 위험도를 14배 이상으로 높이는 흡연을 그만두는 것이 절실한 일이다.

사례 3

L씨(72세, 남)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4~5일 전부터 목소리가 변하고 기침이 지속되어 내과를 방문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 결과 흉부 영상은 정상이었으나 목부위 CT 촬영 결과 종격동의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왼쪽 성대의 마비 증세를 보여 PET/CT를 실시한 결과 종격동의 오른쪽 림프절까지도 침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악성 종양(화살표)이 발견되었다(그림 3). 이 악성 종양이 미주신경에서 갈라지는 '되돌이 후두신경'이 위로 올라가는 부위인 대동맥-폐동맥창(Aortopulmonary window)을 침범해 왼쪽 성대가 마비된 것이고, 조직검사서에서 소세포형 폐암이 확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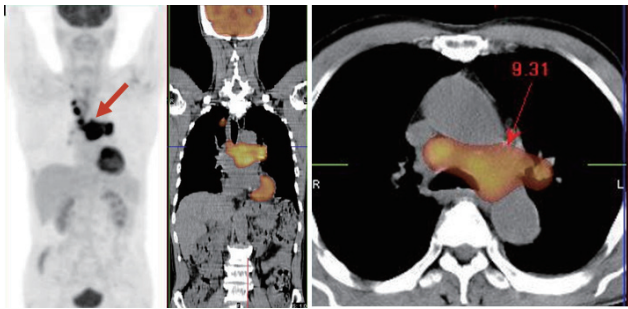


그림 3. 종격동의 광범위한 림프절을 침범한 악성 종양(화살표)의 PET/CT

L씨는 20대 초반부터 하루 한 갑씩 5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력이 있었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뒤에 사망하였다. 이 암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사례 4

K씨(59세, 남)는 17개월 전에 식도암으로 수술을 받고 지내던 중 2주전부터 목소리의 변화가 있어서 흉부외과 외래를 방문했다. 후두경으로 오른쪽 성대 마비가 발견되어 원인을 알기 위해 PET/CT를 촬영하게 되었다. PET/CT로 오른쪽 기관식도 고랑 부위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많이 집적되는 악성 림프절이 발견되었다(화살표, 그림 4). 수술을 시행하여 식도암의 재발성 전이 소견이 확진되었다. 이 경우도 목소리가 먼저 변하여 오른쪽 되돌이 후두신경을 침범 또는 압박한 림프절 전이 병소를 PET/CT로 정확하게 발견한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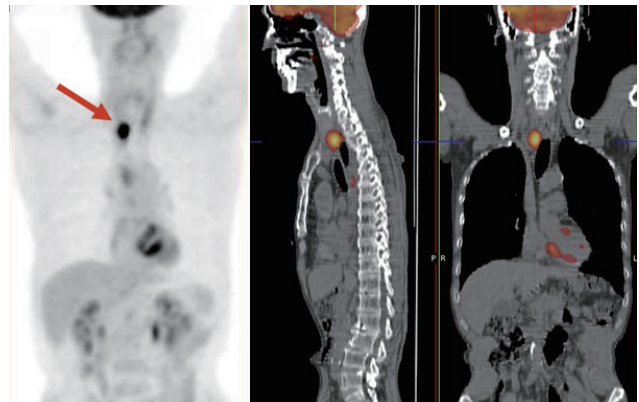


그림 4. 오른쪽 기관식도 고랑 부위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많이 집적된(화살표) 악성 전이성 림프절의 PET/CT

이상의 네 사례로 보아 2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이상이 생길 때, 특히 악성종양을 치료한 과거력이 있거나 흡연 등의 암 발병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는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병변이 단순 가슴촬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증세가 있다면 단순 방사선촬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CT나 PET/CT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KOSCA letter 독자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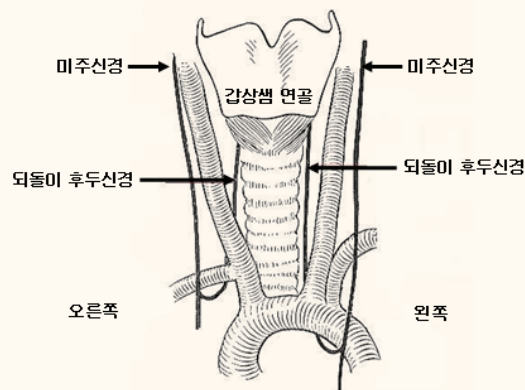
PET/CT 검사란 ?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약품을 이용하여 체내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화하는 최첨단 검사로, 현재 알려진 암 영상 진단 방법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암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PET/CT는 이러한 기능적 검사인 PET과 해부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를 동시에 시행하는 검사로서, 한 번의 간편한 검사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각종 암 진단과 치료의 경과 추적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종종 암환자 등록이 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므로, 본인 부담이 적다.

목소리 변화의 원인

- 성대의 염증
- 성대의 종양(양성 및 악성)
- 신경마비(파킨슨병, 뇌졸중)
- 성대 과사용
- 약물 사용(흡연 포함)

성대 주변 신경의 모식도



하도급 분쟁 해법

【하도급법은 민법·상법·건산법보다 우선 적용】

건설공사와 관련,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개별법령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들 수 있다. 민법과 상법은 개인과 사기업의 사적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고로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실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고도 일반적인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하도급법은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만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하도급법이 우선된다. 또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하도급에 관해 특별히 달리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규정이 하도급법보다 우선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령으로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승강기안전관리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에 추가해 일부 전기공사(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같이 발주 받은 후 이를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을 한 시안에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일괄하도급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38180 판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해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_____
대한전문건설신문 -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해법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1. 3.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28	60
동 구	58	115
서 구	26	30
사 하 구	78	116
영 도 구	25	40
동 래 구	190	245
남 구	103	145
금 정 구	253	380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 제 구	150	230
해운대구	250	355
수 영 구	109	167
부산진구	178	245
북 구	94	120
사 상 구	138	179
강 서 구	234	322
기 장 군	222	336
합 계	2,136	3,085

○ 부산 전문건설업체 변경 현황

2021. 1. 1 ~ 2021. 3. 31

상호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아진건설(주)	(주)디에이
무림건설기업(주)	무림종합건설(주)
(주)한서조경	백두조경(주)
(주)부성	부성건설산업(주)
(주)한일이앤지	(주)서림건설
세웅개발(주)	(주)세웅개발
(주)삼열건설	신광이앤씨(주)
설송건설(주)	(주)신영토건
청우에이스(주)	(주)이피엘
한일금속공업사	한일금속
현민건설(주)	현민건설기술(주)
화성포장건설(주)	화성기업(주)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주)벽성기업	최철식	김정옥
삼지건설(주)	이태원	이태원,이효정
(주)서림건설	윤기철	이춘희
(주)세웅개발	김경숙	장성배
(주)수성건설	조용근	조정옥
신광이앤씨(주)	서순갑	김금희
(주)아이엘	고영주	고영수
(주)에코그린	김한기	김나은
예림건설(주)	김도우	김정권
(주)에서이엔지	김정아	장은철
(주)와이지건설	이용권	이승현
(주)우강건설	변하수	변천수
(주)유승	김도윤	이윤아
(주)이한디자인	이대호	한세라
(주)일창건설	정화근,제종모	제종모
(주)조경디자인선	오혜영,정효영	오혜영
지비토건(주)	안대근	이도련
(주)탑건축환경디자인	배정숙	이경란
(주)티옴조경	조승래	이경열
(주)팬스타트리	장태익,권재근,곽인섭	장태익,박창길
(주)푸른숲조경	이승원	허윤희
풍산건설(주)	이성준	이다혜
풍산기업(주)	장광욱	황정호
(주)한빛	허상훈	장순희
(주)해금인테리어	김종만	박길남
(주)호텔농심	서흥주	홍성웅

대표자 변경

상 호	변경 전	변경 후
(주)가이아디자인	박승민	이태훈
(주)국보엔지니어링	황용	김태형
(주)금성디앤씨	이영주	이만재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	이규화,이동화	이규화
대아이앤씨(주)	강대욱,김연숙	김연숙
(주)대오건설산업	신봉수	신봉기
대청건설(주)	김기형	김근호
(주)도솔건설	남순희	남순희,강종현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이형민,탁규오
백두조경(주)	조선자	박지숙

회원사 현황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1. 1. 1 ~ 2021. 3. 31

전출 업체 현황
(주)가도엘앤씨 (대표자 : 임승현, 울산)
(주)금하수도 (대표자 : 정영군, 경기)
(주)동남엘앤씨 (대표자 : 채경연, 경남)
(주)비케이이앤씨 (대표자 : 김철식, 경남)
아베스건설(주) (대표자: 서종철, 장기두, 경남)
아베스토건(주) (대표자 : 이애연, 울산)
에스지건설개발(주) (대표자: 김석근, 서울)
(주)에이비씨건설 (대표자: 강태형, 경남)
정문건설(주) (대표자 : 임병준, 서울)
현민건설기술(주) (대표자 : 백영산, 전북)

전입업체 현황
광구건설(주) (대표자 : 김민지, 경남)
남우건설(주) (대표자: 하익수, 경남)
(주)마징가건설 (대표자: 권미경, 대전)
(주)보영 (대표자: 허창욱, 경기)
삼경건설(주) (대표자: 최상희, 경남)
세웅개발(주) (대표자 : 장성배, 경기)
신광이앤씨(주) (대표자 : 김금희, 서울)
(유)이레건설 (대표자 : 김관철, 경남)
창민토건(주) (대표자 : 김은주, 경남)
(주)창진건설 (대표자 : 이수미, 경남)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1. 1. 1 ~ 2021. 3. 31



(주)강민에스지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2번길 69, 2층 (대연동)
T: 051-315-079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장민주



경동글라스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29, 2층 (모라동)
T: 051-806-690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박명분



굿라이프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41, 6층 (가야동)
T: 051-897-2248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준엽



(주)김목수이야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520호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T: 051-781-406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성일



(주)내광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길 19, B1층 (구서동)
T: 070-8836-08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심어진



(주)다경건설산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570 509호 (염곡동, 부근빌딩)
T: 051-728-449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최영



(주)다운에이디에이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008호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T: 051-631-822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태철



(주)다지이엔씨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07, 714호 (온천동, 온천파크오피스텔)
T: 051-502-2289
 보유업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승수



대영시설안전(주)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4 (화명동)
T: 051-331-53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강순애



대한개발공사(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339번길
 137-5 (대저2동)
T: 051-852-3225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김미리내



(주)더러움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석물원로9번길
 20, 1306호 (장전동, 금정라움)
T: 051-515-2245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태풍



(주)더오름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0, 701호 (범천동, 삼양빌딩)
T: 051-647-8276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김민희




더이룸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509-3호 (우동)
T: 051-342-426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박정현



(주)만수건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4번길 37 (연산동)
T: 051-866-32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류성덕



(주)만수건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4번길 37 (연산동)
T: 051-866-32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성석현



(주)명성엔아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5
 (반여동)
T: 051-626-9088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김희수



(주)명성엔아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5
 (반여동)
T: 051-626-9088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권성국




(주)무창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525번길 15, 7층 705호 (석대동)
T: 051-521-6309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신중



(주)무한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21번길 25, 2층
T: 051-944-3500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김광호



(주)미건조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19,
 1층 (연산동)
T: 051-868-0410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정태진



(주)부산실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59,
 2층 상가 202호
 (남산동, 남산삼전빌라)
T: 010-2774-6716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조준형



(주)비엠케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206
 (남산동)
T: 051-717-3320
 보유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

이재원



(주)서희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28-1,
 2층 (구서동)
T: 051-518-9514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송호동



성훈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52,
 253호(좌동,신도시시장)
T: 051-731-2775
 보유업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성영재



세도건설(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00, 201호 (부곡동)
T: 051-518-4914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방세은



(주)세웅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69,
 상가동 501호 (수안동)
T: 051-337-8543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장성배



(주)스타라이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5번길11, 2층, 3층
T: 051-741-881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재용

회원사 현황



정동호

(주)시너지테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4로 15, 1층 (녹산동)

T: 051-710-9089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김중혁

(주)신세계이앤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32, 202호 (화명동, 화명리버파크)

T: 051-363-8680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동목

(주)아신디엔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666번길 20-5 (녹산동)

T: 051-919-2512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김부경

(주)아트브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13번길 43 (민락동)

T: 051-752-239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윤학철

아트판넬(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570, 303호 (염곡동)

T: 051-316-8484

보유업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임경태

(주)아트플러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령대로 182번길 11, 2층 202호

T: 051-552-8025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장주덕

(주)약봉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06번길 8, 2층 (주례동)

T: 051-969-3528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이동순

양승토건(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9-788 협성타워 901호

T: 051-441-8808

보유업종: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유창수

(주)우성석건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414호 (모라동, 부산벤처타워)

T: 051-609-9296

보유업종: **석공사업**



이성원

(주)웅진디앤씨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52-14, 301호 (남천동)

T: 051-624-7571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송상원

(주)이송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4번길 20, 상가동2층(부곡동, 무지개타운)

T: 051-929-4867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김명섭

이은컴퍼니(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507호 (우동, 인텔리움센텀)

T: 051-747-385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임연지

(주)자람디자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85번길 94 (화명동)

T: 051-924-90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대욱

지니텍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3-20, 2층 205호 (회동동, 브이원타워)

T: 070-4640-252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도련

지비토건(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68, 5층 (남천동)

T: 051-611-5008

보유업종: **토공사업**



박종선

(주)지산이앤씨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7번길 41 (거제동)

T: 051-506-1006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홍선우

(주)철거다함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대로 24 (회동동)

T: 051-583-0404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김기범

(주)청호토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36, 2층 (송정동)

T: 051-710-7960

보유업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케이앤디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5번길 9, 3층

T: 051-721-7112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박학재



(주)태진기공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57번길
30-11 (명륜동)

T: 051-806-644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창준



(주)투민하우텍

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 19
(수정동)

T: 051-635-255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욱



(주)팬스타트리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5층
(중앙동2가,팬스타크루즈프라자)

T: 051-240-884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박창길



(주)팬스타트리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5층
(중앙동2가,팬스타크루즈프라자)

T: 051-240-8849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장태익



플레닝센터(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617,
4층 (석대동)

T: 051-997-5004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효영



피앤룩스(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65,
3공학관 106에이호
(용당동, 부경대학교)

T: 051-416-9845

보유업종: 수중공사업

윤기영



(주)하늘숲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정관6로
5-20 1층 B109호

T: 052-222-0459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유순녀



(주)한서철도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75번길 29
(범일동)

T: 051-633-0410

보유업종: 철도-궤도공사업

신사완



(유)해밀산업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24번길 69, 402호 에이
(개금동, 풍신빌딩)

T: 051-892-0764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명환



홍익건축사사무소(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611호 (모라동, 부산벤처타워)

T: 051-241-601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박진홍

건설업 사고·사망예방 공종별 체크리스트

구분	작업내용	재해예방대책	재해사례	재해내용
토공	항타기로 흙막이, 기초 파일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타기 전도 방지 절판 설치 항타기 대여자/ 대여받는자 조치 건설장비 안전점검 철저 		항타기의 케이싱 모터 케이블이 낙하하면서 맞아 1명 사망
	흙막이보공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흙막이보공 설계도서 준수 계속관리 철저 (주 1~2회) 		흙막이용 네일그라우팅 작업 중 토사붕괴 1명 사망
	굴착작업 (지하층 터파기, 관로, 터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흙막이보공 적시 설치, 조립도 준수, 부석 제거 		하수관로 굴착작업 중 굴삭기 바퀴에 깔려 1명 사망
	관로 매설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사면 구배 준수 간이 흙막이 적시 설치 		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붕괴 2명 사망
구조물	승강기 피트내부 거푸집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근배근법(D13@200) 등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승강기 피트 내부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보 거푸집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크레인 신호수 배치 		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철골/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호망 설치 데크 양단 고정조치 철저 		철골에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거푸집동바리 설치/콘크리트 타설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준수 콘크리트 분리/분산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로 1명 사망, 6명 부상
	갯폼 조립·해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폼 앵거볼트 빠짐없이 설치 갯폼 전도방지 와이어로프 설치 		갯폼 인양 설치 작업 중 갯폼 낙하 1명 사망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가스농도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갈탄난로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 2명 사망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준수하고 유자격자 작업 확인 지브 등 상부 구조물 균형 유지 건설장비 대여자/대여받는자 조치 		타워크레인 상승 작업 중 상부 구조물붕괴 3명 사망, 2명 부상

구분	작업내용	재해예방대책	재해사례	재해내용
기계 전기 설비	설비 배관 용접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 용접방화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유도선 설치 		설비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2명 사망, 6명 부상
	승강기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방화포, 소화 설비 설치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승강기 설치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1명 사망
	기계식 주차장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체계 구축, 신호수 배치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호망 설치, 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기계식 주차장 설치작업 중 카운터 웨이트에 충돌 1명 사망
	전기설비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등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 이동식사다리 전도 방지 조치, 작업발판용으로 사용금지 		전기설비 설치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 1명 사망
마감	비계 조립/해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비계 조립 기준 준수 • 비계 벽이음 5m 이내마다 클램프 등 전용절물로 설치 		비계 해체작업 중 비계 도괴로 3명 사망, 4명 부상
	지하층 등 밀폐 공간 방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가스농도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지하 피트 내부 방수 작업 중 질 식 1명 사망, 2명 부상
	지하주차장 면처리/도장작업 (고소작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작업대 등 작업발판 설치,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 고소작업대 이탈 시 시동키 분리 조치 		고소작업대로 지하주차장 보면처리 작업 중 끼임 1명 사망
	조적/미장/ 석공사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등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비계 조립기준 준수 • 보호구 착용 관리 철저 		석공사 작업 중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추락 1명 사망
	외벽 패널/드라이 비트 등 마감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 고소작업대 등 작업발판 설치, 발판/작업대에 과적금지 • 비계, 고소작업대 짐하/전도 방지조치 		외부 패널 코킹 작업 중 캐노피에서 추락 1명 사망
	지붕판넬 설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작업용 발판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호망 설치 		지붕판넬 설치 작업 중 추락 1명 사망
	외벽 도장 작업 (달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호망 설치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 앵커파손으로 추락 1명 사망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파리의 별빛 아래

개봉 2021.05.05 | 감독 클로스 드렉셀
출연 카트린 프로, 마하마두 아파, 도미니크 프로트
소외된 이들이 만든 파리의 기적

영화는 프랑스 이민자 강제추방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남모를 상처와 사연으로 홀리스의 삶을 살게 된 '크리스틴'. 세상의 외면과 냉대 속에서 삶을 이어가던 크리스틴 앞에 머물 곳도 엄마도 잃은 아프리카 난민 소년 '솔리'가 나타난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지만 솔리의 엄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긴 여행을 시작한다. 크리스틴은 솔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옷을 사주고 엄마를 찾아주며, 솔리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크리스틴과 동행한다. 두 사람을 조명하는 이 영화는 프랑스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이들이 홀로 어둠을 견디고 있는 차갑고 안쓰러운 현실에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는다.



노매드랜드

개봉 2021.04.15 | 감독 클로이 자오
출연 프란시스 맥도먼드, 데이빗 스트러탄
전 세계가 동행한 가슴 벅찬 여정

경제적 몰락으로 도시 전체가 붕괴된 후 남편마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어 홀로 남겨진 주인공 ‘편’. 편은 추억이 깃든 도시를 떠나 작은 밴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위의 세상으로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편은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매드들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광활한 자연과 길 위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그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다시 살아나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새로운 길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열리며, 길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도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면서 영화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제시카 브루더의 동명의 논픽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제77회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Best Seller BOOK

하루하루를 첫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정해린



마우로 기연 | 우진하역 | 리더스북 | 18,000원

2030 축의 전환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는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경영 석학 '마우로 기연' 와튼스쿨 교수가 경제학, 사회학, 지정학 등을 넘나드는 폭넓은 통찰로 2030년을 예측한다. 책 속의 여러 질문을 통해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만나보자.



짐 퀵 | 김미정역 | 비즈니스북스 | 16,800원

마지막 몰입

CEO와 운동선수, 배우 등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을 비롯해 세계적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찾는 저명한 브레인 کوچ인 짐 퀵. 그는 이 책에서 마인드셋, 동기부여, 방법까지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성공 전략을 밝힌다. 두뇌 전문가 짐 퀵이 직접 전하는 잠재력의 위대한 힘을 소개한다.



김재식 | 위즈덤하우스 | 14,800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나를 돌봄으로 스스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의 운영자'로 16년간 200만 팔로워의 공감을 얻은 김재식 작가. 그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책을 통해 전한다.



김승호 | 스노우폭스북스 | 16,800원

돈의 속성

국내 최상위 부자 김승호 회장이 직접 밝히는 돈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3년 전 어느 극장에서 대중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집필됐다. 과거 가난한 이민 가장이었던 김승호 회장은 어떤 횡재 없이 맨손으로 만들어낸 종자돈을 가지고 성공한 비법을 알려준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3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01 주방과 욕실,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화학 제품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꿀팁을 소개한다.

프라이팬에 가득한 기름은 처치 곤란할 때가 많다. 밀가루는 기름기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세제 대신 사용하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오염물질 흡착력이 뛰어난 베이킹소다는 만능 세제의 역할을 한다. 온수와 1:3으로 배합해서 사용하면 묵은 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탈취 효과도 있어 역한 냄새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02 달걀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된다.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계란 표면을 통해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선한 계란은 껍데기가 거칠고 광택이 없다. 계란에 표면에 적힌 글자를 통해서도 신선도를 알 수 있다. 표면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섞여서 찍혀 있다. 숫자 네 자리는 산란날을 가리키는데 앞의 두 자리는 월, 뒤의 두 자리는 일자다. 산란일자는 산란 시점부터 36시간 이내로 알을 거둔 시점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03 봄철 춘곤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좋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는 입맛을 돌아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엽산, 루테인 등의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춘곤증을 극복하기에 좋은 재료다. 브로콜리도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A, 비타민B2가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면역세포 증진에 좋다. 또한, 신선한 과일과 봄 제철 음식 재료인 냉이, 더덕, 달래 등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면 좋다.

충분한 숙면이 건강을 지킨다

수면 장애의 원인과 예방법

잠을 못 자는 것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면은 신체와 정신에 대한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불면증이 생기면 피로부터 집중력 장애 등의 컨디션 저하와 더불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수면 장애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꼭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글 정해린

나이가 들면 생기는 수면 패턴의 변화

고령기에 접어들면 성인기 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자주 깨고 얕은 잠을 잔다. 총 수면 시간은 7시간 이하로 줄고 수면 효율도 감소한다. 또한 수면 구조도 변화해 잠자리에 누운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년층의 수면 문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원인과 예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수면 장애의 원인

중장년층은 퇴직 등으로 인해 규칙적인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간에 눕거나 활동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다가 중간에 깨는 일이 많아져, 결국 낮잠이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수면 리듬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야간수면의 질 저하 및 불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고령자들은 다양한 질환과 이에 따른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이 또한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년에 흔히 경험하는 사별 등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우울증, 불안 장애,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질환도 흔한 불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질환과 신체적 상태들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통증, 관절염, 협심증, 심부전, 만성폐쇄성 폐 질환, 천식, 말기신부전, 전립선비대, 당뇨, 뇌졸중, 위식도역류, 치매, 파킨슨병, 암 등의 다양한 질병 또한 마찬가지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방법

첫째, 일정한 수면 패턴이 필요하다.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판단한 총 수면 시간 정도만 늘도록 한다. 둘째, 잠들기 전 몸을 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켜주자. 이렇게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피하도록 한다. 셋째, 수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침실은 오직 숙면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방의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침대 주변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전자기기를 치우도록 하자.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고, 공복이라면 따뜻한 우유를 소량 마시는 것도 좋다.



역사의 소리를 간직한 곳

영도 갯강이에술마을

영도대교와 남항대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갯강이에술마을은 항구에서 발원한 해양문화수도 부산의 원형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다.

십여 곳에 달하는 수리조선소에서는 선박들의 출입이 여전히 활발하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은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이야기가 넘쳐난다.

글 정해린

갯강이마을의 본래 명칭은 '대평동'이다. 대평동은 본래 풍랑을 피하는 어선이 머물던 장소라는 뜻의 '대풍포(大風浦)'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풍(風)'을 '평(平)'으로 바꿔 '대평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1998년에 남항동에 편입된 이후에는 남항동으로 불리지만 대평동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뤄진 매축으로 현재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 국내 최초로 발동기를 장착한 배를 만든 다나카 조선소가 세워졌던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다. 7~80년대에는 원양어업 붐을 타고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마을 이름인 '갯강이'는 수리조선소에서 배 표면에 녹이 슬어 너덜너덜해진

페인트나 조개껍데기를 망치로 두드려 벗겨낼 때 '갯강' 소리가 난다 하여 생겨났다. 현재에도 10여 곳의 수리조선소와 200여 개에 달하는 공업사 및 선박 부품업체가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조선산업의 발전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역사유적과 조선산업시설은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마을 곳곳에는 페인팅아트와 키네틱아트 등 예술가들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여전히 옛 대평동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남포동과 인접해있고, 도로로 영도대교를 건너 근방을 여행할 수도 있는 등 지리적 접근성도 좋다.



독일을 대표하는 르네상스 건축물

하이델베르크성 (Heidelberg Castle)

글 정해린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도시인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성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독일의 대표 유적 중 하나다. 1225년 팔츠백 오토 비텔스바흐가 축조한 하이델베르크성은 1537년에 낙뢰로 파괴된 뒤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후에도 성은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황폐해졌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발생한 30년전쟁에서 하이델베르크성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피해가 복구되는 듯 보였으나, 그 후 이어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성은 폐허가 되었다. 프랑스의 유명 시인이자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하이델베르크성의 역사를 보고 '이 성은 유럽을 뒤흔든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왔으며, 지금은 그 무게로 무너져 내렸더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성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축성 양식은 독일-네덜란드 르네상스풍의 성관과 중세풍 성채의 일부가 혼용되어 있다.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증축 및 개축된 만큼 고딕양식과 르네상스 양식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성의 외관은 그림 같은 모습으로 각국의 화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쟁으로 인해 일부가 파괴된 성의 잔해는 자연과 어우러져 오묘한 매력을 풍긴다.

시의 중심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성은 구시가지와 네카어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성 내부의 지하 실에는 거대한 술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술통은 높이 8m로 약 220,000 L의 술을 저장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술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그림과 사료를 전시해 놓은 공간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성에서 네카어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보이는 언덕길 또한 유명한 장소다. 일명 '철학자의 길'로 독일이 자랑하는 괴테와 여러 철학자들이 산책하며 명상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을 감상하는 것 또한 성을 방문할 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향기와 풍미 가득

우아하게 와인 즐기기

홈카페와 홈트레이닝 등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와 여러 활동들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홈술 또한 같은 맥락이다. 여럿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대신 집에서 간단히 술을 즐기는 형태의 홈술에는 간편하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와인이 제격이다.

글 정해린

와인의 종류

와인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색상이다. 색상에 따라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와인의 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포도껍질이 함유하고 있는 색소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다. 포도즙을 포도껍질과 함께 오래 돌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이 추출되어 와인이 보랏빛에 가까워지며 삼미(뽕은맛)도 강해진다. 안토시아닌의 함유량이 높은 레드 와인은 뽕은맛이 강하다. 반면 화이트 와인은 잘 익은 백포도나 적포도의 과피를 미리 제거한 후 과즙으로 발효시킨 것으로 레드 와인에 비해 뽕은맛이 거의 없다.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 과 같이 포도 과피를 첨가하여 발효시키다가 어느 정도 색이 우러나오면 과피를 제거한 후 과즙으로만 제조한 것으로 레드 와인에 비해 뽕은맛이 약하다. 단맛이 강한 화이트 와인의 경우 와인 입문자에게 추천하며 로제 와인 또한 비교적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

와인이 맛있는 온도

와인은 종류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화이트 와인은 10~15°C, 레드 와인은 15~20°C, 그리고 샴페인은 10°C 정도로 마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법칙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가벼운 느낌의 레드 와인은 차게 하여 마셔도 무방하며, 더운 여름에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모두 차게 마실 수도 있다. 또한 와인을 감정하기 위한 테이스팅을 할 때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갑게 해서 마시기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와인은 온도가 높을 경우 숙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하며, 보관 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시다 남은 와인 보관법

마시다 남은 와인은 깨끗한 코르크로 다시 막아 세워서 보관하면 된다. 코르크가 부서졌거나 새 코르크가 없을 경우에는 '와인 스톱퍼'라고 하는 마개를 이용해 막아 두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마시다 남은 와인은 와인 셀러에 넣어 두는 것이 제일 좋다. 전용 셀러가 없다면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마개를 댄 와인은 잘 보관하면 2주 까지도 가능하나, 와인 고유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맛이 변하기 전에 되도록 빨리 마시는 편이 좋다.

틈날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러시아 사람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러시아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즈드라스트부이찌
만나서 반갑습니다	Очень приятно 오친 뽀리아뜨너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스푸시바
미안합니다	Извините 이즈비니찌
좋은 하루 보내세요	досвидания 다스비다니아

러시아 사람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TIP. 01

사람과의 만남 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 한국과 달리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산책을 합니다. 러시아 곳곳에는 공원이 많으며 러시아 사람들은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식사를 함께 하는 약속인지 미리 파악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TIP. 03

한국에서는 가까운 지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식사 후 뒷정리를 함께 도와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외부인이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러시아 사람의 집에 초대 받았을 때 설거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TIP. 02

러시아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을 때 본인의 집에 초대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친근감의 표시이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대 받은 집에 방문할 때는 거창하거나 비싼 선물 대신 성별에 따라 꽃이나 술 같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TIP. 04

사람 앞에서 침을 뱉는 행동은 어딜 가나 좋은 인상을 주는 행동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합니다. 또한 길을 갈 때 타인을 앞질러 가는 것도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STORY 01

아인슈타인의 직업

어느 날 6살 난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엄마, 난 이다음에 커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듣직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뭘 한 사람인 줄은 알지?”

“엄만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우유’ 만드는 사람이잖아.”



☺ STORY 02

행복을 깨달은 남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친구한테 그랬다며?”

“뭘?”

“당신 친구 부인이 나한테 그러는데 당신이 결혼 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았다고 했다며~”

“응! 그랬어!”

“당신이 웬일이야?”

그러자 남편 왈

“어~ 그건 사람이 뭐든 잃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야!”



나른한 오후 시간을 깨워줄 간단한 스트레칭

봄이 되면 마치 춘곤증처럼 피로감과 졸음이 밀려올 때가 많아진다.
특히 식후의 나른한 오후에는 졸음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창문을 열어 주변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기지개를 켜거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 간단 스트레칭1

- ❶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자세로 앉거나 자리에서 일어난다.
- ❷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간다.
- ❸ 오른쪽으로 천천히 숙여 허리를 당겨준다.
- ❹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한다.



✔ 간단 스트레칭2

- ❶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자세로 앉거나 자리에서 일어난다.
- ❷ 왼손은 어깨 뒤쪽으로, 오른손은 허리 뒤쪽으로 가져간다.
- ❸ 중간 지점에서 양손을 맞잡고, 3~5초간 유지한다.
- ❹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한다.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중앙회 김영윤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은 1월 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1월 11일에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영윤 중앙회장 및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하며,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02 중앙회 김영윤 회장은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최근 권익위가 정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한 '지역 중소기업 권익보호 방안'에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전문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용자제도를 시행한 지 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중 약 30%가량이 조합 특별용자를 이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은 특별용자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특별용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용자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서 로그인 후 용자-용자(대체)신청으로 들어가 용자내역에서 사용 중인 특별용자 건을 선택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완납증명서 제출(또는 신청화면에 발급번호 입력) 및 이자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부산시회 2021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1.5월 중	제29회 부산·광주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2021.6.1(화)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마감(개인업체)	
2021.6월 중	제2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1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별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력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04 2021년 이력교육 일정(5~8월)

수강신청 마감일	학습기간		수료증발급
	부터	까지	
5월 3일	5월 5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6일	5월 8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3일	5월 15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0일	5월 22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27일	5월 29일	6월 4일	6월 5일
6월 3일	6월 5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0일	6월 12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14일	6월 16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17일	6월 19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4일	6월 26일	7월 2일	7월 3일
7월 1일	7월 3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7일	7월 9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5일	7월 17일	7월 23일	7월 24일
8월 5일	8월 7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2일	8월 14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18일	8월 20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6일	8월 28일	9월 3일	9월 4일

05 2021년 집합교육 일정(5~8월)

일자	지역	장 소
4월 30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상의홀
5월 7일	울산	울산가족문화센터 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84, 1층 대강당
5월 1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5월 14일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6층 대강의실
5월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 비발디홀
5월 28일	진주	GNU컨벤션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82-1, 3층 다목적홀
6월 4일	수원	디에스컨벤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1층 대연회장
6월 11일	대구	대구문화방송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컨퍼런스룸
6월 18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 제1연수관 1층 소강당
6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6월 25일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7층 대회의실
7월 2일	창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대강당
7월 9일	전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강당
7월 15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7월 23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상의홀
8월 13일	대구	대구무역회관 대구시 동구 신천동 89-6, 4층 대회의실
8월 20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 제1연수관 1층 소강당
8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4층 회의실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금정토건
이성림 대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일신우일신의 다짐으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코스카레터를 펼칩니다.

코로나19로 한숨 쉬는 와중에, 보호막이 견혀지고 무한 경쟁 속에 망망히 서게 된 전문건설업의 생존법이 코스카레터에 오롯이 담겼기를 소망하며 페이지 마다의 정보를 접합니다. 반가운 편지 기다리듯 정성을 다해주시는 다음호도 기대하겠습니다.



(주)금천엔지니어링
박혜진 과장

코스카레터는 현재 이슈가 되는 전문건설업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정보들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점들과, 현 시점에서 제일 큰 화두인 상호진출 허용공사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연정조경건설 차장 **강민경**
- 은진개발(주) 사원 **노은영**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87.745%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가격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추가로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1. 5. 31(월)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명)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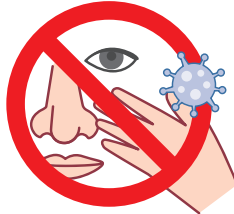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근로자 수칙

근로자 예방수칙



작업 전·중·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개인 작업복·보호구
사용으로 교차감염 예방하기



임신여성·장년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꼭 착용하기



호흡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는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작업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